아리아리! 정선
the mecca of arirang, jeongseon

정 선 군

군 보

http://www.jeongseon.go.kr/

군보는 공문서로의 효력을 갖는다.

제618호 2023. 2. 15.(수)

【고 시】

○ 정선군 고시 제2023-10호 정선(고한) 군계획시설사업(소로3-11호선) 실시계획인가 고시……1

○ 정선군 고시 제2023-15호 정선아리랑상권 상권활성화구역 지정 및 사업계획 승인(변경) 고시……4

【공 고】

○ 정선군 공고 제 2023-151호 정선군 금고지정 및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9

○ 정선군 공고 제2023-92호 2023년도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 등록신청 공고……37

○ 정선군 공고 제2023-131호 정선군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45

○ 정선군 공고 제2023-139호 정선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52

○ 정선군 공고 제2023-170호 정선군 정선이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87

○ 정선군 농업기술센터 기술연구과 공고 제2023-01호 화상병 사전예방을 과수 농작업자 이행준수 행정명령……92

□ 발행 : 정선군청 기획관 (전화:560-2213, FAX:560-2592)

고 시

정선군 고시 제2023-10호

정선(고한) 군계획시설사업(소로3-11호선) 실시계획인가 고시

강원도 고시 제1973-2577호(1973. 12. 26.)로 최초 결정된 정선(고한) 군계획시설(소로3-11호선)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의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을 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2월 3일

정 선 군 수

1. 위 치 : 강원도 정선군 고한읍 고한리 29-66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가. 종 류 : 군계획시설사업(도로)
   나. 명 칭 : 고한 소3-11호(상갈래) 군계획시설 개설공사

3.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

시설명	군계획시설 결정		실시계획 인가	비 고
	세부시설명	규 모	금회시행	
도로	소(국)3-11	L=242m, B=6m	L=165m, B=6m	

4. 사업시행자 및 주소
   가. 성 명 : 정선군수(도시과장)
   나. 주 소 :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봉양3길 21

5. 사업기간 : 실시계획인가일로부터 ~ 2024. 5. 31.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 지번, 지목 및 면적,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 주소 : 붙임

7. 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해당없음

◉ 토지조서

연번	위치	지번	지목	면 적 (㎡)		소 유 자		이해관계인		
				공부	편입	주소	성명	관계인	성명	소유권이외의권리의종류및내용
1	고한읍 고한리	29-55	대	68	20		건교부			
2	〃	29-48	대	26	2		건교부			
3	〃	29-33	대	37	4		국토부			
4	〃	29-49	대	117	90		건교부			
5	〃	29-50	대	18	3		건교부			
6	〃	29-66	대	45	35		정선군			
7	〃	29-67	대	77	62		정선군			
8	〃	29-3	대	240	2		강원도			
9	〃	29-68	대	68	55		정선군			
10	〃	29-69	대	16	12		정선군			
11	〃	31-8	도	28	24		기재부			
12	〃	31-9	도	83	1		기재부			
13	〃	30-12	임	453	1		정선군			
14	〃	30-18	임	36	30		정선군			
15	〃	30-16	대	3	1		장*영			
16	〃	30-19	임	99	86		정선군			
17	〃	30-15	임	166	145		정선군			
18	〃	30-1	임	102	35		정선군			
19	〃	274-302	천	86	35		정선군			
20	〃	274-301	천	134	128		정선군			
21	〃	274-116	대	84	71		정선군			
22	〃	274-303	대	79	71		정선군			
23	〃	274-4	천	13132	15		건설부			
24	〃	274-304	대	67	61		정선군			
25	〃	274-305	대	122	102		정선군			
26	〃	274-306	대	116	2		정선구			
계				15,502	1,093					

정선군 고시 제2023-15호

정선아리랑상권 상권활성화구역 지정 및 사업계획 승인(변경) 고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9조의2, 제19조의5 규정에 따라 정선아리랑상권 구역 지정 및 사업계획 승인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23년 2월 13일

정 선 군 수

1. 상권활성화사업 목적
 가. 인구감소, 지역경제와 상권의 침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정선아리랑 시장을 중심으로 상권 자생력 확보를 위한 상권 활성화

2. 상권활성화 구역 지정 사항
 가. 구 역 명 : 정선아리랑상권 상권활성화 구역
 나. 위 치 : 정선군 정선읍 일원(북실리, 봉양리, 애산리 일원)
 다. 면 적 : 189,640㎡(영업장 면적 99,362.8㎡)

3. 상권활성화 사업계획
 가. 사 업 비 : 80억 원(국비 40, 군비 40)
 나. 사업기간 : 2020년 ~ 2024년(5년)
 다. 사업내용
  ○ 상권환경개선 : 체류형 관광 인프라 거점 조성, 특화거리 조성 등
  ○ 상권활성화 : 소상공인 역량강화, 테마존 운영 프로그램 등
  ○ 조직운영 : 상권관리기구 운영 등

4. 기타사항
 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정선군청 경제과(033-560-2440), (재)정선군상권활성화재단(033-560-224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구역 경계도

구분	내 용
위치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봉양리, 애산리, 북실리 일대
구 역 지 도	
구 역 지적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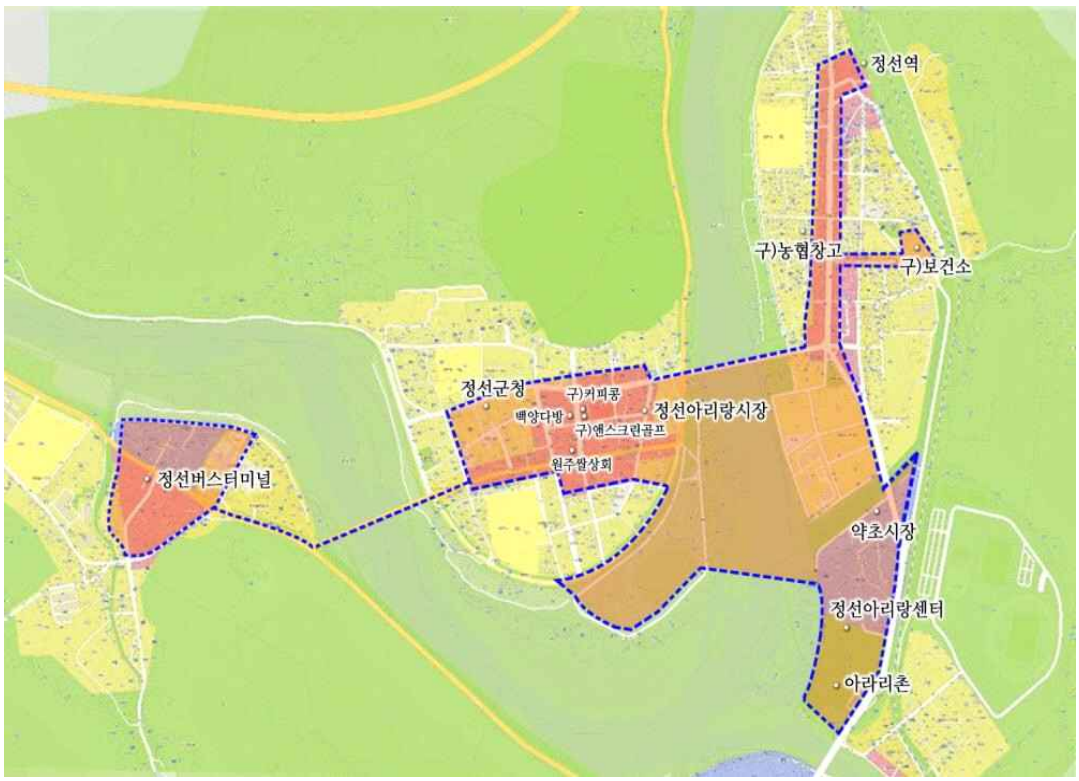

사 업
구역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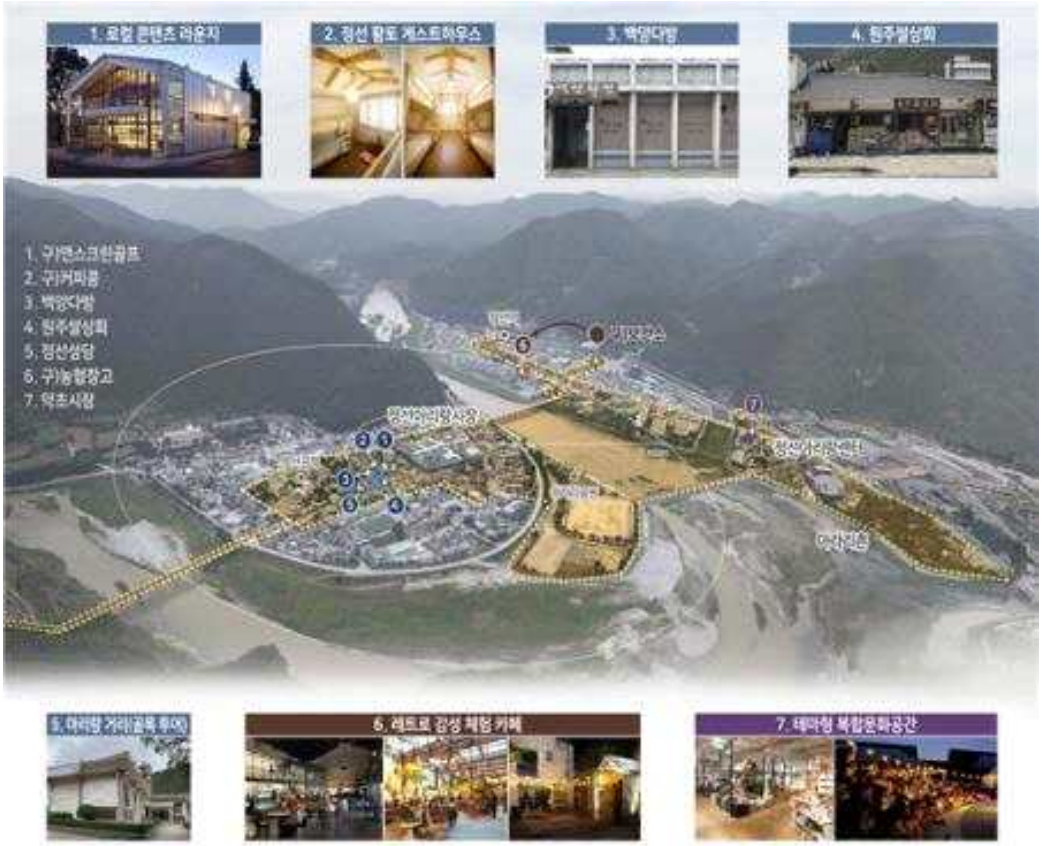
1. 로컬 콘텐츠 라운지
2. 정선 활토 게스트하우스
3. 백암다방
4. 원주발상회
1. 구)텐소크린골프
2. 구)커피콩
3. 백암다방
4. 원주발상회
5. 정선성당
6. 구)농협창고
7. 약초시장
5. 레트로 감성 체험 카페
7. 테마형 복합문화공간

정선버스터미널 주변 상권
정선시티투어 버스
장터 거는 길 안내 사인물 정비
정선아리랑시장 주변 상권
홍보거점시설(로컬 콘텐츠 라운지 겸 안내소), 정선 약초 테마의
아리랑 거리, 정선 활토 게스트하우스
최첨거리 창업인큐베이팅
정선역 주변 상권
레트로 감성 체험 카페
아리랑 보부상 로드
(장터 거는 길
안내 사인물 정비)
약초시장 주변 상권
테마형 복합문화 공간
편집샵
플리마켓 공간
이벤트 존
고객 쉼터
정선 활토
게스트하우스
안내사인물 설치
아리랑 거리
홍보거점
정선역
정선껏 정선한끼
뮤직아트
원주발상회
저잣거리
창업인큐베이팅
레트로 감성 체험 카페
안내 사인물
정선군청
정선시티투어 정류장
아라리공원
테마형 복합문화공간
약초시장
정선아리랑센터

【붙임 2】 세부사업 계획

○ 상권활성화 사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소요예산	산출근거	비고
상권환경개선	체류형 관광 인프라 거점 조성	아라리 로컬 콘텐츠 라운지 (구. 앤스크린골프)	610	232.39㎡ (A_70평) 로컬 콘텐츠 라운지, 안테나샵, 아라리 약초 테라피, 정선 약초 옥상 정원 등	
		정선 황토 약초 게스트 하우스 (구. 커피콩)	365	148.595㎡ (A_45평) 편의시설, 황토 약초 게스트하우스 4인 2실, 2인 5실 등, 마당 정원 조성	
		레트로 감성 체험 카페(로컬유통채널 구축) (구. 농협창고)	455.5	433.58㎡ (A_131평) 빈트로 카페, F&B 상점, 혼행(혼자하는 여행) 및 관광객 편의시설, 자전거 투어 등	
		테마형 복합문화 공간 (약초시장)	581	734.34㎡ (A_222평) 리버뷰 라운지, 오피스, 스튜디오, 편집샵, 플리마켓, 축제(이벤트) 존, 고객 쉼터 등 234백만원	
		거점 공간 거리표기 및 환경조성 (안내 사인물 및 바닥 사인)	716.45	거점 공간 거리표기 및 바닥 사인 등	
		소계	2,727.95	34.11%	
	특화 거리 조성	아리랑 거리 조성 (골목투어)	1,000	정선아리랑시장 서문 앞 구간 정선아리랑 경관 조명, 안내 사인물, 외부 스피커, 화단, 벤치, 이벤트 존, 바닥 사인, 컬러조닝 등	
		아리랑 보부상 로드 (장터 가는 길 안내 사인물 정비)	350	지주형 안내 사인물 5개 × 6 = 30백만원 정선버스터미널 ~ 정선아리랑시장(1.4㎞) 구간 안내 사인물 정비 정선역 ~ 정선아리랑시장(1.1㎞) 구간 약초시장 ~ 제2정선교(440m) 구간 정선아리랑 가사 및 스토리를 활용한 디자인 320백만원	
		정선아리랑시장 안내 사인물 정비	200	먹자골목 안내 사인물 정비 정선아리랑시장 아케이드 외부 안내 사인물 정비	
		정선버스터미널, 정선역(정선아리랑 상권 안내 사인물)	30	정선버스터미널, 정선역 정선아리랑상권 구역도 및 정선시티투어 운행 안내도	
		소계	1,580	19.75%	

구 분			소요예산	산출근거	비고
상권활성화	소상공인 역량 강화	정선아리랑상권 빅데이터 분석	100	정선아리랑상권 빅데이터 분석	
		디자인 패키지 개발	342.250	정선아리랑상권 구역 내 공통화된 디자인 패키지 개발	
		소상공인 경영개선 교육 (자치 거버넌스)	450	재창업 또는 업종전환 전문 교육, 경영개선 교육, 1:1 컨설팅, 선진지견학, 협동조합설립지원, 조직 강화, 청결운동 및 캠페인 5년	
		정선 약초 알림이 육성 및 1인 크리에이터 육성	161	정선아리랑상권을 방문하는 고객들에게 약초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제공 1인 크리에이터 육성으로 유튜브를 활용한 지속적 노출을 통한 관심 유도	
		소계	1,053.25	13.16%	
	테마존 운영 프로그램	플리마켓	50	테마별 복합문화 공간 플리마켓 운영 지원	
		문화·예술·이벤트 운영·홍보 마케팅	1,144.3	거점 상권 이벤트 개최 및 대한민국 5일장 박람회 개최, 지역동아리 육성, 홍보 마케팅	
		거점 상권별 스토리텔링 개발	210	정선아리랑상권 거점별 스토리텔링 개발 및 프로그램 운영	
		창업 인큐베이팅 (저잣거리 및 청년몰 활성화)	100	(가칭)정선껏 정선한끼 정선 오리진(Origin)의 로컬 브랜드 상품과 소울(Soul) 푸드 개발, 거리음식(finger food) 개발	
		소계	1,504.3	18.80%	
조직운영	상권관리기구 운영		1,134.5	상권관리기구 운영 5년	
	소계		1,134.5	14.18%	
총 계			8,000	100%	

❍ 연차별 사업예산

사업예산

· 사 업 비 : 총 8,000백만원

구 분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	5년차	계
국 비	841.45	1,016.95	1,117.95	563.95	459.7	4,000
지방비 (지방비+자부담)	841.45	1,016.95	1,117.95	563.95	459.7	4,000
계	1,682.9	2,033.9	2,235.9	1,127.9	919.4	8,000

공 고

정선군 공고 제 2023-151호

정선군 금고지정 및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정선군 금고지정 및 운영 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널리 알려 이에 대한 군민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2월 9일

정 선 군 수

1. 개정 이유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안에 따라 수의계약 요건에 해당 되더라도 사전 심의절차를 거쳐 적격성 여부를 판단하고, 약정기간이 4년으로 확정되어 있어 변화요인 발생시 탄력적 대응과 이해관계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자 「정선군 금고지정 및 운영 규칙」을 일부 개정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군 금고 선정의 기준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수의계약 요건에 해당 되더라도 사전 심의(안 제4조제1항제2호)
- 금고심의위원회의 적격여부 심의

○ 금고의 계약기간을 탄력적으로 변경(안 제3조제3항)
- (기존) 4년/확정 ⇒ (변경) 4년이내/탄력적으로 조정가능

○ 위원회 구성 시 외부위원 구성비율을 과반수로 확대 (안 제6조제3항)
- 민간전문가가 과반수가 되도록 변경

○ 이해관계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6조의2)
가. 제척사유 기재
- 친인척 및 이해관계인 등 제척
나. 공정한 심의·평가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기피 신청
다.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 스스로 회피

3. 의견제출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2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정선군수(참조 : 세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의 성명(단체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 기타의견

※ 의견제출 및 연락처

- 주 소 : (우)26131 정선군 정선읍 봉양3길 21 정선군청 세무과
- 전 화 : 033 - 560-2913
- 팩 스 : 033-560-2587
- 이메일 : wil@korea.kr

4. 참고사항

○ 정선군 금고지정 및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 신·구조문 대비표 1부.
○ 관계법령 1부.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의견서

자치법규명	정선군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의견 제출자	성 명(기관·단체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일부개정규칙안 내용	검토의견 (의견 제출내용)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3년 월 일

제 출 자 (서명 또는 인)

정 선 군 수 귀하

정선군 규칙 제 호

정선군 금고지정 및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정선군 금고지정 및 운영 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2호부터 제6조 제3항제3호까지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 제1항 제2호 “이 경우 제5조제1항 각 호의 기준에 준하여 정선군금고심의위원회의 적격여부 심의를 거쳐야 한다“ 로 하고,

제4조 제3항 중 “4년으로”를 “4년 이내”로 한다.

제6조 제2항 제1호 중 “제4조제1항제2호에 의한 금고지정방법의 결정에 관한 사항”을 “금고지정을 수의방법으로 결정 시 그 적격 여부 심의에 관한 사항”으로 한다.

제6조 제3항 중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를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하되, 위원 중 민간전문가가 과반수가 되도록 한다”로 한다.

제6조 제3항 제3호 중 “지방의원”을 “정선군 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으로 한다.

제6조의2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평가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을 경우
5. 위원이 평가대상 금융기관의 제안서 작성시 참여하는 등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평가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안건의 심의·평가에

서 회피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지정되어 있는 금고는 약정기간이 만료되는 날 까지 이 규칙에 의하여 약정이 체결된 것으로 본다.

붙임 1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금고지정) ① (생 략) 1. (생 략) 2. 경쟁을 실시하여도 1개 금융기관만 경재에 참여하고 재공고입찰을 하여도 1개 금융기관만 경쟁에 참여한 경우로서 참여한 금융기관을 금고로 지정하는 경우. < 신 설 >	제4조(금고지정) ①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 ---------- ---------- ---------- -- . 이 경우 제5조 제1항 각 호의 기준에 준하여 정선군 금고심의위원회의 적격여부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생 략) ③ 지정된 금고의 약정기간은 4년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회계연도를 나누지 않는다.	② (현행과 같음) ③ ---------- 4년 이내로 ---------- ----------.
제6조(금고지정심의위원회 구성·운영) ① (생 략) ② (생 략) 1. 제4조제1항제2호에 의한 금고 지정방법의 결정에 관한 사항 2. ~ 4. (생 략)	제6조(금고지정심의위원회 구성·운영) ①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1. 금고의 지정을 수의방법으로 결정시 그 적격 여부 심의에 관한 사항 2. ~ 4. (현행과 같음)

③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9명 이상 12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③ ----------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하되, 위원 중 민간전문가가 과반수가 되도록 한다.
1. ~ 2. (생 략)	1. ~ 2. (현행과 같음)
3. 지방의원	3. 정선군 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 신 설 >	제6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평가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을 경우 5. 위원이 평가대상 금융기관의 제

	안서 작성시 참여하는 등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평가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안건의 심의·평가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붙임 2 **관련법규**

[행정안전부 예규 제71호
(2019. 5. 9. 개정)]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

행 정 안 전 부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

1. 총 칙

1 목 적

○「지방회계법」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이하 “자치단체”라 한다.)의 금고 지정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정하고자 함

2 용어의 정의

① 금고(「지방회계법」제38조제1항)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하 “자치단체의 장”이라 한다.)이 소관현금과 그의 소유 또는 보관에 속하는 유가증권의 출납 및 보관, 각종 세입금의 수납, 세출금의 지급 등 금고업무를 취급하게 하기 위하여 계약의 형식을 빌어 지정한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과「지방회계법」제38조 제1항 단서에 따른 금융기관을 말함

② 일반회계(「지방재정법」제9조제1항)

-「지방재정법」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회계를 말함

③ 특별회계(「지방재정법」제9조제2항)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직영기업 그 밖의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또는 특정자금이나 특정세입·세출로서 일반세입·세출과 구분하여 계리(計理)할 필요가 있을 때에 한하여 법률 또는 조례로 설치한 회계를 말함

④ 기금(「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2조)

- 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지방자치법』제142조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운용하는 자금을 말함

⑤ 금고지정

- 금융기관 중 해당 자치단체의 금고업무를 담당할 금융기관을 지정하는 것을 말함

⑥ 금고약정

- 자치단체의 장과 해당 자치단체의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이 금고업무 취급에 관한 의사를 합치시키는 것을 말하며 약정서를 작성하여 쌍방이 서명 또는 기명날인함으로써 약정이 성립됨

3 적용범위

○ 본 기준은 자치단체의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의 금고 지정에 대하여 적용함

○「지방공기업법」의 규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의 금융기관 지정에는 적용하지 아니함

④ 금고의 수

○ 일반회계는 단일금고로 지정하고 일반회계를 포함한 자치단체 총 금고의 수는 2개를 초과할 수 없음

※ 특정기금을 예치할 경우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내 금리가 높은 상품에 예치·운용하여야 하며, 원금보전이 되지 않는 금융상품에 예치하는 것은 지양

⑤ 금고의 약정기간

○ 금고의 약정기간은 4년 이내에서 자치단체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함.

○ 금고의 약정기간은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회계연도를 나누지 아니함

2. 금고지정 방법

① 개 념

○ 금고지정 방법에는 경쟁방법 및 수의(隨意)방법이 있으며,

- 경쟁방법은 2개 이상의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금고평가기준과 절차에 따라 심의·평가하여 금고로 지정하는 것을 말함

- 수의방법은 경쟁방식에 의하지 않고 특정 금융기관을 금고로 지정하는 것을 말함

② 금고지정 방법

○ 금고지정은 경쟁방법에 따라 지정하여야 함.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 한하여 수의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할 수 있음

가. 자치단체 구역 내에 금융기관이 1개인 경우

나. 경쟁을 실시하여도 1개 금융기관만 경쟁에 참여하고 재공고입찰을 하여도 1개 금융기관만 경쟁에 참여한 경우로서 참여한 금융기관을 금고로 지정하는 경우

다. 2개 이상의 자치단체가 통합하여 설치된 자치단체가 설치일이 속하는 회계연도의 잔여기간(잔여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는 다음 회계연도까지)에 대해 금고를 지정하는 경우

3. 금고지정 평가기준

1 경쟁방법에 의하여 지정할 경우 평가기준

○ 금고를 지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 표>의 기준으로 평가함

가.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25)

나. 자치단체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17)

다. 지역주민이용 편의성(18)

라. 금고업무 관리능력(22)

마. 지역사회 기여 및 자치단체와 협력사업(7)

바. 기타사항 - 지역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자치단체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11)

※ 지방세기본법 제135조 2항 및 지방세외수입금의징수등에관한법률 제20조 2항에 따른 지방세입금 납부·수납처리를 위한 전자적서비스에 해당되는 부분은 평가에서 제외

○ <별표>의 기준 중 항목 6(기타사항)은 다음과 같이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할 수 있음

가. 항목 6에 자치단체 실정에 맞도록 세부항목을 정할 수 있음 (예시① 참조)

나. 항목 6을 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항목 6의 배점(11점)을 항목 1, 2, 3, 4에 세부항목을 추가하여 배분하거나 또는 기존 세부항목에 점수를 더하여 줄 수 있음(예시③ 참조)

- 다만, 항목 2(자치단체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에는 세부항목 추가는 가능하나 기존 세부항목에 점수를 더하여 줄 수는 없음

- 항목 5(지역사회기여 및 자치단체와 협력사업)에는 세부항목을 추가하거나 기존 세부항목에 점수를 더하여 줄 수 없으며, 또한 항목 5와 유사한 세부항목을 다른 항목에 추가할 수 없음

※ 다만, 항목6을 활용하여 금융위의 지역재투자 평가결과를 반영할 수 있음

○ <별표>에 대한 각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 및 방법은 다음의 원칙을 준수하여 조례(규칙)으로 정하여야 함

가. 세부항목별 배점부여 및 평가는 금융기관이 제출한 자료 등에 의거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균등하게 배점하여 평가하고, 필요시 평가항목을 등급별·순위별로 나누어 배점을 부여하여 평가할 수 있음(예시② 참조)

나. 세부항목별 배점하한은 배점한도의 60%이상으로 하여야 하고, 모든 평가 세부항목의 순위간 점수편차는 배점한도의 최대 10%에서 최소 4%의 비율을 동일하게 적용하여 균등하게 배분하여야 함(예시② 참조)

- 다만, 항목 2(자치단체에 대한 대출 및 예금 금리), 항목 5(지역사회 기여 및 자치단체와 협력사업)는 순위간 점수편차는 다른 평가 세부항목에 적용되는 비율의 1/2을 적용함

(예시①) 항목 6을 정하는 경우

지 침	조례 또는 규칙안 예시
6. 기타사항(11)	6. 기타사항(11) - 항목 가. 지역재투자 실적(3) - 세부항목 * 금융위의 지역재투자 평가결과 반영 가능 나. 주민의견 수렴결과(5) - 세부항목 * 전문여론조사기관을 통해 금고 지정·운영 등에 대한 주민의견을 조사. '20년부터 세부 실시방안을 마련하여 반영 가능 다. 0000(3) - 세부항목

(예시②) 배점하한 및 점수편차(순위간 점수편차 10% 적용시, 항목2는 5%적용)

지 침	조례 또는 규칙안(예시)
1. 신용도 및 재무구조 안정성(25) 가. 외부기관의 신용조사 상태평가(8) - 국외평가기관(4) 나. 주요경영지표 현황 - 총자본비율(안전성, 6점) ※ 지역조합에 대해서는 순자본비율(안정성, 6점)로 평가 - 고정이하여신비율(건전성, 6점) - 자기자본이익율(수익성, 5점) * 경영지표 평가 세부항목별 등급기준은 해당 감독기관에서 각 지역조합 유형별(신협, 농·수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등)로 다르므로 해당 감독기관(금감원, 새마을금고중앙회 등)의 기준에 따름 * 금융감독원, 행정자치부 등 감독기관의 경영실태평가 또는 검사기준에서 양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만점처리 가능 2. 자치단체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17) 가. 정기예금 예치금리(7)	1. 신용도 및 재무구조 안정성(25) 가. 외부기관의 신용조사 상태평가(8) - 국외평가기관(4) (1순위 4.0점, 2순위 3.6점, 최저순위 2.4점) 나. 주요경영지표 현황 - 총자본비율(안전성, 6점) ※ 지역조합에 대해서는 순자본비율(안정성, 6점)로 평가 - 고정이하여신비율(건전성, 6점) - 자기자본이익율(수익성, 5점) * 경영지표 평가 세부항목별 등급기준은 해당 감독기관에서 각 지역조합 유형별(신협, 농·수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등)로 다르므로 해당 감독기관(금감원, 새마을금고중앙회 등)의 기준에 따름 * 금융감독원, 행정자치부 등 감독기관의 경영실태평가 또는 검사기준에서 양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만점처리 가능 2. 자치단체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17) 가. 정기예금 예치금리(7) (1순위 7.0점, 2순위 6.65점, 최저순위 4.2점)

(예시③) 항목 6(자치단체 자율항목)의 배점을 타 항목에 배분하는 경우

지 침	조례 또는 규칙안(예시)
1. 신용도 및 재무구조 안정성(25점) 가. 외부기관의 신용조사 상태평가(8) - 국외평가기관(4점) - 국내평가기관(4점) 나. 주요 경영지표 현황(17) - 총자본비율(6) ※ 지역조합에 대해서는 순자본비율(안정성 6점)로 평가 - 고정이하여신비율(6) - 자기자본이익율(5) * 경영지표 평가 세부항목별 등급기준은 해당 감독기관에서 각 지역조합 유형별(신협, 농수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등)로 다르므로 해당 감독기관(금감원, 새마을금고중앙회 등)의 기준에 따름 * 금융감독원, 행정자치부 등 감독기관의 경영실태평가 또는 검사기준에서 양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만점처리 가능	1. 신용도 및 재무구조 안정성(27점) 가. 외부기관의 신용조사 상태평가(8) - 국외평가기관(4점) - 국내평가기관(4점) 나. 주요 경영지표 현황(19) - 총자본비율(6) ※ 지역조합에 대해서는 순자본비율(안정성 6점)로 평가 - 고정이하여신비율(6) - 자기자본이익율(5) - 유동성커버리지비율 또는 대손충당금적립율 등(2) - 항목추가 * 경영지표 평가 세부항목별 등급기준은 해당 감독기관에서 각 지역조합 유형별(신협, 농수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등)로 다르므로 해당 감독기관(금감원, 새마을금고중앙회 등)의 기준에 따름 * 금융감독원, 행정자치부 등 감독기관의 경영실태평가 또는 검사기준에서 양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만점처리 가능
2. 자치단체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17점) 가. 정기예금 예치금리(7) 나. 공금예금 적용금리(6) 다. 자치단체 대출금리(4)	2. 자치단체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20점) 가. 정기예금 예치금리(7) 나. 공금예금 적용금리(6) 다. 자치단체 대출금리(4) 라. 수시입출금식 예금금리(3) - 항목추가 ※ 추가배점 불가
3. 지역주민이용 편의성(18점) 가. 관내지점의 수, 관내 무인점포 수, 관내 ATM기 설치 대수(7) ※ 금고지정 여부에 따라 필수로 설치되는 지점은 제외 나. 지방세입금 수납처리능력(5) 다. 지방세입금 납부편의 증진방안(6)	3. 지역주민이용 편의성(21점) 가. 관내지점의 수, 관내 무인점포 수, 관내 ATM기 설치 대수(8) - 추가배점 ※ 금고지정 여부에 따라 필수로 설치되는 지점은 제외 나. 지방세입금 수납처리능력(6) - 추가배점 다. 지방세입금 납부편의 증진방안(7) - 추가배점
4. 금고업무 관리능력(22점) 가. 세입세출업무 자금관리 능력(6) 나. 금고관리업무 수행능력(8) 다.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등 전산처리능력(8) * 전산시스템 보안인증 등 전산보안을 강화하여 평가	4. 금고업무 관리능력(25점) 가. 세입세출업무 자금관리 능력(6) 나. 금고관리업무 수행능력(8) 다.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등 전산처리능력(8) * 전산시스템 보안인증 등 전산보안을 강화하여 평가 라. OCR센터 운영능력 및 계획(3) - 항목추가
5. 지역사회 기여 및 자치단체와의 협력(7점) 가.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5점) 나. 자치단체와의 협력사업(2점) *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는 '실적'으로만 평가, "자치단체와의 협력사업" 은 '계획'으로만 평가	5. 지역사회기여 및 자치단체와의 협력(7점) 가.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실적(5점) 나. 자치단체와의 협력사업계획(2점) *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는 '실적'으로만 평가, "자치단체와의 협력사업" 은 '계획'으로만 평가 ※ 항목추가 및 추가배점 불가

2 수의방법에 의하는 경우 평가기준

○ 지역실정, 금융기관의 안정성 등을 고려하여 자치단체 조례 또는 규칙으로 평가기준을 정할 수 있음

3 『자치단체와의 협력사업계획』 평가 및 협력사업비 공개방법

① 자치단체장은 금고약정에 따른 협력사업비는 모두 현금으로 출연토록하고 「지방재정법」 제34조에 따라 세입예산에 편성한 후 공개하여야 하며, 세출예산에 편성한 경우에는 집행내역을 공개하여야 함

○ 자치단체와 협력사업은 계획으로만 평가(기존 협력사업실적 배제)

※ 금고지정을 위한 입찰공고서에 자치단체금고지정 평가항목 중 "5.-나. 자치단체와의 협력사업계획"의 평가는 현금출연만 인정하도록 명시

※ 2014.3.7. 개정·시행한 동 예규 부칙의 경과규정에도 불구하고 자치단체 소관 사업에 금고가 직접 현금으로 집행하는 협력사업은 2016.3.1.부터 자치단체 출연금으로 변경

② 협력사업비 공개 방법

○ (금액 공개) 금고약정 개시후 30일 이내에 금고은행에서 출연할 협력사업비 총액을 홈페이지와 자치단체 공보(시보·도보·군보·구보)에 공개

○ (세입예산 편성내역 등 공개) 협력사업비의 세입예산 편성내역, 세출예산에 편성한 경우에는 집행내역까지 재정공시항목에 포함하여 공시

<법제처 유권해석('02.5.31)>

○ 금고지정약정에 출연금이 금고의 지정에 대한 대가적 의미를 가지도록 규정되어 있는 경우 이는 반대급부에 의한 것이어서 기부금품모집규제법상의 기부금품에 해당되지 아니함.

③ 『자치단체와 협력사업』 관련 항목에 추가배점 등 불가

○ 자치단체에 출연한 금액의 과다에 따라 금고지정이 좌우되거나 금융기관간의 과당경쟁을 예방하기 위하여

- 본 항목에는 세부항목을 추가하거나 기존 세부항목에 점수를 더하여 줄 수 없음. 또한, 본 항목과 유사한 세부항목을 다른 항목에 추가할 수 없음

④ 협력사업비 과다 출연 시 행정안전부에 보고

○ 자치단체의 연평균 협력사업비가 전년대비** 출연규모의 20% 이상 증액되는 경우 또는 평균잔액 대비 연평균 협력사업비가 순이자마진*을 초과하는 경우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출연금이 과다한 경우로 보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함

- 행정안전부장관은 조치가 필요한 경우, 금융당국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음

* 금융감독원이 발표하는 국내은행의 영업실적 중 최근 순이자마진 수치를 참조

** 직전 금고은행과 약정기간의 연평균 출연금 규모와 신규 금고은행과 약정기간의 연평균 출연금 규모 비교

○ 복수금고의 경우에도 각 금고별 연평균 협력사업비가 전년대비 출연규모의 20% 이상 증액되는 경우 또는 평균잔액 대비 협력사업비가 순이자마진을 초과하는 경우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함

4. 금고의 지정절차

1 금고지정심의위원회 구성·운영

○ 자치단체의 장은 금고지정을 위하여 금고지정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고 함)를 구성하여 심의를 거쳐야 함

※ 자치단체 구역 내에 금융기관이 1개인 사유와 자치단체를 통합함에 따라 수의방식으로 금고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를 두지 아니할 수 있음

○ 심의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평가함

가. 금고지정 방법의 심의에 관한 사항

- 수의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심의위원회에서 금고지정 방법을 심의함

나. 금융기관 제출자료의 확인·심의 및 평가에 관한 사항

- 심의위원회 심의 사항 중 평가와 관련된 사항은 자치단체의 조례 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별도의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할 수 있음

다. 금고지정을 위한 평가결과 공개에 관한 사항

라. 기타 금고지정을 위한 평가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9명이상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함

○ 위원은 대학교수,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지방의원 등 관련분야에 지식과 경험이 있는 민간전문가(과반수이상) 및 관계공무원 등으로 구성하되 평가대상 금융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제외하여야 하며, 자치단체의 장이 위촉함

○ 위원장 및 위원 선정, 위촉 기간, 위원 수,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 등 기타 심의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자치단체의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함

2 금고지정을 위한 공고 및 통지

○ 자치단체의 장은 금고지정방식을 결정한 후 금고 참여의사가 있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공보 등에 공고 및 통지하여야 함

○ 금고지정을 위한 공고 및 통지를 할 때에는 제안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금융기관에게 금고평가 기준 등을 교부하거나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3 제안서의 심사 및 평가

○ 심의위원회는 금고평가기준에 따라 각 금융기관에서 제출한 제안서를 금융감독원 등 정부기관 및 관련기관이 공시한 자료와 비교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의·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심의표를 작성, 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기한까지 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 심의위원회의 제안서 심사 시 각 항목별 평가결과가 다른 항목의 평가결과에 상호 영향을 주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함

4 평가결과의 공개

○ 자치단체의 장은 심의위원회의 평가결과 중 금고지정에 참여한 금융기관의 순위와 총점을 공개하여야 함

5 금고의 지정

○ 자치단체의 장은 심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금융기관별 심의결과를 바탕으로 금고를 지정함

5. 금고약정 및 해지

1 금고약정

○ 자치단체의 장은 금고를 지정한 후 10일 이내에 금고지정 결과를 자치단체 공보에 공고하고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에 통지하여야 함

○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약정을 체결하여야 함

○ 금고약정서에는 취급업무, 각종 법령·조례·규칙의 준수의무, 세입수납금의 송금 및 이체, 일시차입 및 기채, 배상 및 변상책임, 비용부담 및 수수료, 계약해지, 계약 조문해석, 유효기간 등 필수적인 사항을 포함하여야 함

2 금고약정의 해지

○ 자치단체의 장은 금고약정서상의 해지 사유가 발생하였거나 기타 금고를 변경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금고약정의 해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함

○ 자치단체의 장은 금고약정 해지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지통지 전에 금고를 운영하는 금융기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음

6. 보 칙

1 금고운용 보고

○ 자치단체의 장은 일반·특별회계·기금별 자금운용 상황 및 금고은행의 재무건전성 평가보고 등을 상·하반기별 또는 매분기별로 보고토록 하여야 함

○ 보고에는 예금과목별 금액, 예치기간, 금융상품별 수익률, 이자수입 총액 등 자금관리에 있어 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함

○ 자치단체의 장은 상·하반기별로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상황을 보고토록 하여야 함

2 조례 등 위임

○ 본 기준의 범위 내에서 금고지정을 위한 세부적인 사항은 자치단체의 조례 또는 규

칙으로 정함

2 재검토기한

○ 행정안전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19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7. 부 칙

○ 이 예규는 2019년 5월 9일부터 시행함

붙임 3 현행 규칙

정선군 금고지정 및 운영 규칙

(　　제정) 2008.08.18 규칙 제1133호
(일부개정) 2011.11.02 규칙 제1184호
(일부개정) 2012.11.14 규칙 제1201호
(일부개정) 2014.11.05 규칙 제1246호
(일부개정) 2015.09.01 규칙 제1257호
(일부개정) 2018.12.14 규칙 제1308호
(일부개정) 2019.09.09 규칙 제1322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회계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정선군의 금고지정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정하여 공금에 속하는 현금과 유가증권의 출납 및 보관, 각종 세입금의 수납, 세출금의 지급등 금고업무를 취급하게 하기 위한 금융기관의 지정과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2.14.>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금고"란 「지방회계법」제38조에 의하여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소관 현금과 그의 소유 또는 보관에 속하는 유가증권의 출납 및 보관, 각종 세입의 수납, 세출금의 지급 등 금고업무를 취급하게 하기 위하여 계약의 형식을 빌려 지정한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과 「지방회계법」제38조제1항 단서에 따른 금융기관을 말한다.<개정 2015.9.1. 2018.12.14.>
2. "일반회계"란 「지방재정법」제9조제1항에 따른 일반회계를 말한다.<개정 2018.12.14.>
3. "특별회계"란 「지방재정법」제9조제2항에 따른 지방직영기업, 그 밖의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또는 특정자금이나 특정세입·세출로써 일반세입·세출과 구분하여 회계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 한하여 법률 또는 조례로 설치한 회계를 말한다.<개정 2018.12.14.>
4. "기금"이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2조에 따라 자치단체가 특별히 정한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42조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설치·운용하는 자금을 말한다.<개정 2018.12.14.>
5. "금고지정"이란 금융기관 중 정선군(이하 "군"이라 한다) 금고업무를 담당할 금융기관을 지정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18.12.14.>

6. "금고약정"이란 군수와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이 금고업무 취급에 관한 의사를 합치시키는 것을 말하며, 약정서를 작성하여 쌍방이 기명날인 함으로써 약정이 이루어 진다.<개정 2018.12.14.>

제3조(적용 범위) 이 규칙의 적용 범위는 다음과 같다.<개정 2018.12.14.>

1. 군의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기금의 금고지정에 대하여 적용한다.
2. 「지방공기업법」의 규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의 지정금융기관 지정에는 적용하지 않는다.<개정 2018.12.14.>

제4조(금고지정) ① 군수는 금고를 지정하기 위한 방식으로 경쟁방법 또는 수의방법으로 금고업무를 취급하기 위한 금융기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수의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관내에 금융기관이 1개인 경우
2. 경쟁을 실시하여도 1개 금융기관만 경쟁에 참여하고 재공고입찰을 하여도 1개 금융기관만 경쟁에 참여한 경우로서 참여한 금융기관을 금고로 지정하는 경우
3. 2개 이상의 자치단체가 통합하여 설치된 자치단체가 설치일이 속하는 회계연도의 남은 기간(남은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는 다음 회계연도까지로 한다)에 대해 금고를 지정하는 경우<신설 2015.9.1.><개정 2018.12.14.>
4. <삭제 2012.11.14>
5. <삭제 2011.11.02>

② 일반회계는 단일금고로 지정하고 일반회계를 포함한 총 금고의 수는 2개를 넘을 수 없다.<개정 2018.12.14.>

③ 지정된 금고의 약정기간은 4년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회계연도를 나누지 않는다.<개정 2018.12.14.>

제5조(금고 지정기준) ① 금고를 지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금고의 안정성과 수익성을 도모하고 군민의 이용편의와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평가·지정하여야 한다.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2. 군에 대한 예금 및 대출금리 수준
3. 지역 주민 이용 편의성<개정 2015.9.1.>
4. 금고업무 관리능력
5. 지역사회 기여 및 군과 협력사업 추진<개정 2015.9.1.>

② 제1항에 따른 금고지정을 위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은 별표와 같고 배점부여기준은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18.12.14.>

③ 제4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른 수의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항을 고려하여 금고지정 적격성 여부를 심의할 수 있다.

제6조(금고지정심의위원회 구성·운영) ① 군수는 금고지정을 공정하게 하기 위하여 정선군금고지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관내에 금융기관이 1개만이 소재하여 수의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를 두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의결한다.

1. 제4조제1항제2호에 의한 금고 지정방법의 결정에 관한 사항
2. 금융기관 제출자료의 확인·심의 평가에 관한 사항
3. 금고 지정을 위한 평가결과 공개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금고 지정을 위한 평가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9명 이상 12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개정 2018.12.14.>

1.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법무사 등 관련분야에 3년 이상 종사한 민간전문가
2. 군 소속 5급이상 공무원
3. 지방의원

④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⑤ 위원의 임기는 위원으로 위촉된 날부터 새로운 금고약정이 체결되는 때까지로 하되, 필요시 이를 조정할 수 있다.

⑥ 위원회의 회의는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 범위 내에서 수당 및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⑧ 위원회는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의를 하여야 하며, 심사결과는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금융기관의 영업상황등 위원회가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한 사항은 공개하지 않는다.<개정 2018.12.14.>

⑨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두되, 간사는 군금고 업무담당이 서기는 업무담당자로 한다.

제7조(위원의 위촉해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원을 위촉해제 할 수 있다.

1. 위원회 업무를 소홀히 하거나 품위 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된 경우
2.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제8조(금고 지정절차) ① 군수는 금고지정 참여 의사가 있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금고계약 만료 3개월 전까지 군보와 게시판 및 군 인

터넷 홈페이지에 공고 및 게재 하여야 한다.

② 금고지정을 위한 공고를 할 때에는 제안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금융기관에게 제안서 제출에 필요한 금고 평가기준 등을 발급하거나 열람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8.12.14.>

③ 위원회는 금고 평가기준에 따라 각 금융기관에서 제출한 제안서를 금융감독원 등 정부기관 및 관련기관이 공시한 자료와 비교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평가·심사한 후 금융기관별 심의표를 작성하여 금고계약 기간 만료 40일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위원회에서 제출받은 금융기관 심의결과를 바탕으로 금고계약 만료 30일 전까지 금고를 지정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심의위원회의 평가결과 중 금고지정에 참여한 금융기관의 순위와 총점을 공개하여야 한다.<신설 2019.9.9.>

제9조(금고지정 공표와 약정) ① 군수는 금고를 지정한 후 10일 이내에 금고지정 결과를 군보와 군 홈페이지에 공고 및 게재하고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②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금고 약정서에는 취급업무, 각종 법령·조례·규칙의 준수의무, 세입 수납금의 송금 및 이체, 일시차입 및 기채, 배상 및 변상책임, 비용부담 및 수수료, 액정해지, 약정조문 해석, 유효기간 등 필수적인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9조의2(협력사업비 운용 및 공개) ① 군수는 금고약정에 따른 협력사업비는 모두 현금으로 출연하도록 하고,「지방재정법」제34조에 따라 세입예산에 편성한 후 공개해야 하며, 세출예산에 편성한 경우에는 집행내역을 공개해야 한다.<개정 2018.12.14.>

② 협력사업비 공개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금고약정 개시 후 30일 이내에 금고은행에서 출연할 협력사업비의 총액을 군 홈페이지와 군보에 공개한다.
2. 협력사업비의 세입예산 편성내역을 공시한다.
3. 협력사업비의 세출예산은 특정사업에 편성한 경우에 집행내역까지 재정공시 항목에 포함하여 공시한다.[본조신설 2015.9.1.]

③ 군수는 연평균 협력사업비(복수금고의 경우 각 금고별 연평균 협력사업비)가 전년대비 출연규모의 20퍼센트이상 증액되는 경우 또는 평균잔액 대비 연평균 협력사업비가 순이자마진을 초과하는 경우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출연금이 과다한 경우로 보아, 군수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신설 2019.9.9.>

제10조(금고의 중도해지) ① 군수는 약정서상의 해지사유가 발생하였거나 기타 금고를 변경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할 경우 금고약정의 해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금고약정 해지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의무불이행의 정도, 경위 및 이

로 인한 손해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하되, 해지 통지 전에 금고를 운영하는 금융기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개정 2018.12.14.>

③ 금고의 중도해지 후 금고를 재지정할 때에는 제8조 및 제9조의 기한은 예외로 한다.

제11조(금고운용 보고) ① 금고는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별 자금운용상황 및 금고은행의 재무건전성 평가보고 등을 매 반기 또는 분기별로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보고에는 예금과목별 금액, 예치기간, 금융상품별 수익률, 이자수입 총액 등 자금관리에 있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금고는 재무건전성 등 급격한 변동을 가져오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군수에게 그 현황을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8.12.14.>

④ 금고는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상황을 군수에게 보고해야 한다.<신설 2015.9.1.>

제12조(운영규정) 이 규칙에서 정하는 것 외에 금고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18.12.14.>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체결되어 있는 금고약정은 약정기한까지 이 규칙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 칙<개정 2011. 11. 02 규칙 제118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12. 11. 14 규칙 제120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14.11.5 규칙 제1246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4년 11월 29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일부개정 2015.9.1. 규칙 제1257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체결되어 있는 금고의 계약은 이 규칙에 따른 것으로 본다.

부 칙<일부개정 2018.12.14. 규칙 제130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일부개정 2019.9.9. 규칙 제1322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지정되어 있는 금고는 약정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 이 규칙에 의하여 약정이 체결된 것으로 본다.

【별표】<개정 2015.9.1.>

금고지정 평가기준 및 배점기준

(제5조제2항 관련)

항 목	세 부 항 목	배점
계		100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소 계	31
	가. 외부기관의 신용조사 상태 평가(10점) - 국외평가기관(6점) - 국내평가기관(4점) * 지역조합에 대해서는 국내평가 기관의 신용 조사만으로 전체 배점(10점)을 평가 나. 주요 경영지표 현황(21점) - 총자본비율(7점) * 지역조합에 대해서는 순자본비율(안정성, 7점)로 평가 - 고정이하여신비율(7점) - 자기자본 이익률(6점) - 원화유동비율 또는 대손충당금 적립율(1점) * 경영지표 평가 세부항목별 등급 기준은 해당 감독기관에서 각 지역조합 유형별(신협, 농·수·산림조합,새마을금고 등)로 다르므로 해당 감독기관(금감원, 새마을금고중앙회 등)의 기준을 따름 * 금융감독원, 행정자치부 등 감독기관의 경영실태 평가 또는 검사 기준에서 양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만점처리 가능	
2. 군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소 계	18
	가. 정기예금 예치금리(6점) 나. 공공예금 적용금리(5점) 다. 자치단체 대출금리(4점) 라. 수시입출금식 예금금리(3점)	
3. 지역주민 이용 편의성	소 계	20
	가. 관내지점의 수 및 지역주민 이용 편리성(5점) * 금고지정 여부에 따라 필수로 설치되는 지점은 제외 나. 지방세입금 수납처리능력(7점) 다. 지방세입금 납부편의 증진 방안(8점)	
4. 금고업무 관리 능력	소 계	22
	가. 세입세출업무 자금관리 능력(5점) 나. 금고관리업무 수행능력(7점) 다. 전산시스템 보안관리등 전산처리 능력(7점) 라. OCR센터 운영능력 및 계획(3점)	
5. 지역사회 기여 및 군과 협력사업	소 계	9
	가.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실적(5점) 나. 군과의 협력사업계획(4점) *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는 "실적"으로만 평가, 군과의 협력사업은 "계획"으로만 평가.	

※ 각 항목별 세부 평가기준 및 방법은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준수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1. 세부항목별 배점부여 및 평가는 금융기관이 제출한 자료 등에 의거 비교 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균등하게 배점하여 평가하고, 필요 시 평가항목을 등급별 · 순위별로 나누어 배점을 부여하여 평가할 수 있다.
2. 세부항목별 배점하한은 배점한도의 60퍼센트 이상으로 하여야 하고, 모든 평가 세부항목의 순위 간 점수 편차는 배점한도의 최대 10퍼센트에서 최소 4퍼센트의 비율을 동일하게 적용하여 균등하게 배분하여야 한다. 다만, 항목 2(자치단체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항목 5(지역사회 기여 및 군과의 협력사업)는 순위 간 점수편차는 다른 평가 세부항목에 적용되는 비율의 2분의 1을 적용한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규칙명 : 정선군 금고지정 및 운영 규칙 일부개정안

○ 성명(단체명) : (서명 또는 인)

○ 주 소 :

○ 전 화 번 호 :

규칙(안) 항목별 내용	찬성여부		의견(사유)	기타 참고사항
	찬성	반대		

정선군 공고 제2023-92호

2023년도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 등록신청 공고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 제14조에 따라 2023년도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이하 “기본직불금”) 등록신청에 필요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월 25일

정 선 군 수

1. 신청기간 및 방법 : 2023. 2. 1. ~ 4. 28.

※ 코로나-19 등 여건을 고려하여 온라인(인터넷, 스마트폰)을 활용한 비대면 간편 신청 및 읍면동 방문 신청 기간을 구분 운영

가. 비대면 : 2.1~2.28(1개월간), 대상자 개별 문자 발송 및 인터넷 신청

* ‘22년 기본직불 등록정보와 ’ 23년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의 변동이 없고 자격요건 사전검증 결과 적격한 농업인

나. 방문 : 3.2~4.28(2개월간), 농지 소재지 읍·면·동사무소 방문 신청

* 비대면 미신청 농업인, 신규신청자, 관외경작자, 농업법인 등

2. 신청대상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지에서 실경작하는 농업인 및 농업법인 중 다음의 지급요건을 충족한 자

가. 기본직불금 지급대상 농지

○ 과거의 쌀직불·밭직불·조건불리직불금의 지급대상 농지요건*을 충족한 농지

* (쌀직불) ‘98~’00년도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 (밭직불) ‘12~’14년도 밭농업에 이용된 농지, (조건불리) ‘03~’05년도 조건불리지역에서 농업에 이용된 농지(초지는 제외)

○ 다만, 농지전용 허가·신고 등, 임대차계약 종료, 부정수급으로 등록제한 기간 중인 자가 소유한 농지, 농업에 이용하지 못하는 농지면적(폐경) 등은 지원에서 제외

나. 기본직불 지급대상 농업인 및 농업법인

○ ‘16년 이후 직불금 수령자, 후계농업인·전업농업인 등 정책으로 선정된 자, 신규

신청자*, 승계대상자** 등

* 신규신청자의 경우 직전 3년 중 1년 이상 지급대상 농지 0.1ha(농업법인은 5ha) 이상에서 실제로 농업에 종사하였거나, 수확한 농산물 연간 판매금액이 120만원 이상인 농업인(농업법인은 4500만원)

** ’22년도 기본직불금을 수령하였으나 사망, 질병 등의 사유로 농업에 종사하는 것이 불가능할 경우 ①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서 ②사유 발생 직전 1년 이상 등록자와 주소를 같이하고 ③해당 농지를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농업인(①+②+③ 모두 충족)

○ 다만, 도시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 요건 미충족, 농업외 종합소득 3700만원 이상, 실제 농업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자, 부정한 농지 분할 등이 확인된 경우 지급대상자에서 제외

3. 기본직불금 유형별 자격요건

가. 소농직불금

○ 기본직불금 지급대상 농업인 및 농지의 지급요건을 충족하는 농업인 중 아래의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농가

자격요건 항목	자격 기준
① 농가 내 모든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의 지급대상 농지의 면적 합	0.1ha 이상 ~ 0.5ha 이하
② 농가 내 모든 구성원이 소유한 농지의 면적의 합	1.55ha 미만
③ 농가 내 모든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각각의 영농종사 기간	직전연도 기준 연속하여 3년 이상
④ 농가 내 모든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각각의 농촌 거주 기간	직전연도 기준 연속하여 3년 이상
⑤ 농가 내 모든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각각의 농업외종합소득금액	2,000만원 미만
⑥ 농가 내 모든 구성원의 농업외 종합소득금액의 합	4,500만원 미만
⑦ 농가 내 모든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각각의 축산업 소득금액	5,600만원 미만
⑧ 농가 내 모든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각각의 시설재배업 소득금액	3,800만원 미만

* 농가구성원 : ① 주민등록표상 같이 거주하고 있는 세대원, ② 주민등록표에 없으나 가족관계증명서에서 (1) 배우자, (2) 미혼인 19세 미만의 자녀, (3) 혼인 외의 사유로 세대분리 기간이 3년 이내인 자녀

** 지급대상 농지면적이 0.5ha를 초과하나, 면적직불금으로 산정시 120만원 미만인 경우 소농직불금을 선택하여 신청 가능

나. 면적직불금

○ 기본직불금 지급대상 농지 및 농업인의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나 소농직불금 대상이 아닌 농업인 및 농업법인

4. 지급단가

가. 소농직불금 : 농가당 120만원

나. 면적직불금 : 기본직불 등록자의 지급대상 농지를 대상으로 농업진흥지역 논·밭, 농업진흥지역 밖의 논 및 밭을 구분하여 면적 구간별 역진적 단가를 적용

(단위 : 만원/ha)

구간 (면적) / 유형	1구간 (2ha 이하)	2구간 (2ha 초과 ~ 6ha 이하)	3구간 (6ha 초과)
농업진흥지역 논·밭	205	197	189
농업진흥지역 밖의 논	178	170	162
농업진흥지역 밖의 밭	134	117	100

○ 현재의 지목과 관계없이 직불금 지급대상 농지요건에 따른 단가 적용

* (논) '98~'00년도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 (밭) '12~'14년도 밭농업에 이용된 농지, '03~'05년도 조건불리지역에서 농업에 이용된 농지(초지는 제외)

○ 농업인은 30ha, 농업법인은 50ha, 들녘경영체 운영법인은 400ha까지 지급 상한

* 다만, 2019년에 종전의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을 정당하게 지급받은 농지 면적의 합이 면적 직접지불금 지급상한면적을 초과하여 지급받은 경우 초과 면적까지 인정

5. 신청방법

가. 사전안내

○ 농업경영체 등록된 농지·농업인을 기준으로 기본직불금 신청 전에 자격요건을 검증하고 지급 가능성이 있는 농업인에게 신청 안내

* 농업경영체 등록된 전화번호를 통해 대상 농업인에게 문자발송(2월), 방문접수 기간에 신청하지 아니한 농업인 대상 신청 안내 추가 발송(4월, 2회)

나. 비대면 간편 신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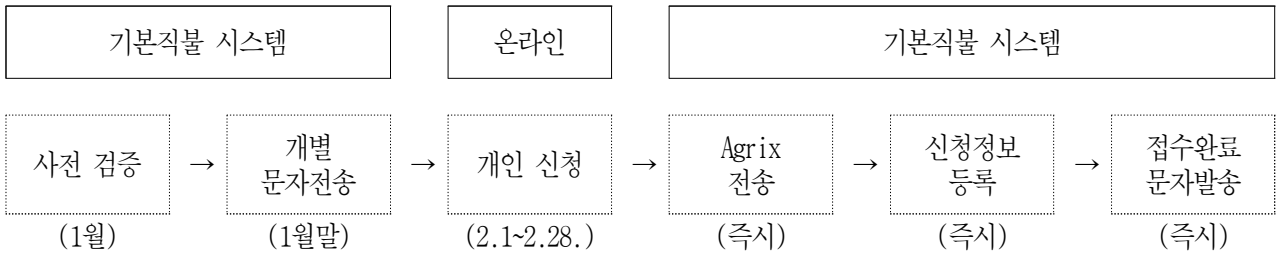

○ 대상 : ‘22년 기본직불 등록정보와 ’ 23년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의 변동이 없고 자격요건 사전검증 결과 적격한 농업인

○ 신청기간 : ‘23. 2. 1. ~ 2. 28.

○ 신청방법 : 농식품부에서 대상 농업인에게 비대상 간편 신청 대상 안내 및 온라인(인터넷, 모바일, ARS) 간편 신청

* 인터넷 스마트폰을 활용하여 ① 이름·주민번호·핸드폰인증 → ② 개인정보 제공 동의 → ③ 지급대상 농업인 및 농지정보, 금액 확인 → ④ 신청 확인

○ 제출서류 : 없음

다. 방문 신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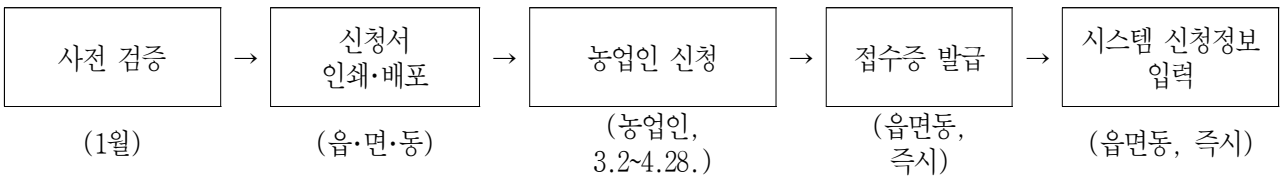

○ 대상 : 비대면 미신청 농업인, 신규신청자, 농업법인 등

○ 신청기간 : ’ 23. 3. 2. ~ 4. 28.

○ 신청방법 : 기존수혜자는 관할 읍·면·동에서 기본직불 등록신청서를 인쇄·배포하나 신규신청자 등은 관할 읍·면·동에 방문하여 신청

* 관할 읍·면·동 : 농지면적이 가장 넓은 소재지의 읍·면·동사무소

- 등록신청서를 받은 농업인등은 안내문에 따라 신청서를 작성하되 ’ 22년 기본직불 지급받은 면적, 사전 안내문을 참고하여 폐경 면적*은 신청면적에 포함하지 않도록 주의

* 농지가 아닌 토지(산지, 초지 등), 불경지(미관리 및 방치 등), 묘지, 폐기물·모래·자갈적치, 골재채취장·양어장, 건축물부지·주차장, 정원(조경수, 관목수 등 식재), 공사장 등 농업에 이용되지 않은 면적

- 소농신청서를 받은 경우 다음 사항을 참고하여 농가 구성원을 모두 기재한 후 개별 서명을 받아 읍·면·동에 제출

* 서명이 불가능할 때 농가 구성원의 휴대폰 번호를 기재하여 제출. 향후 자동응답 시스템(ARS)을 통해 개인정보 제공 동의 등을 진행할 예정

1) 소농직접지불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를 확인하여 모든 농가 구성원의 정보를 아래와 같이 작성

① 주민등록표등본에 있는 가족 구성원은 ④-1에 기재

② 주민등록표등본에는 없으나(신청자와 같이 거주하지 않은 세대원 중) 가족관계증명서에 있는 1) 배우자, 2) 미혼인 19세 미만의 자녀, 3) 혼인 외의 사유로 세대분리 기간이 3년 이내인 세대원은 ④-2에 기재

④ 가족관계 인적정보 작성표(신청인 기준)	※ **"소농"을 선택하실 경우만 해당**

④-1 주민등록상 세대원(세대주 포함) ※ 주민등록표등본을 기준으로 작성합니다.

관 계	성 명	주민등록번호
		-
		-

④-2 주민등록상 세대를 분리한 가족구성원 ※ 가족관계등록부를 기준으로 작성하며 ④-1에 기재하지 않은 구성원만 작성합니다.

		-
		-

2) 농지면적 등을 확인 후 신청할 면적을 기재하고, 소농직접지불금 선택

3) 축산업이나 시설재배업을 하는 경우 연간 소득 추정금액을 기재

4) 뒷부분 하단의 "행정정보 이용 및 정보제공 동의"에 농가 구성원의 자필 서명

* 미성년자는 세대주가 대리 서명 가능

- 소농직불금 자격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면적직불금으로 신청

○ 제출서류 : 필수대상서류는 제출이 원칙. 다만 행정정보공동이용이 가능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토지대장 등은 생략 가능

구 분	제출서류
1. 등록신청서 **필수**	▸ 기본직불 등록신청서(* 행정정보 이용 및 정보제공 동의 서명)
2. 본인 소유가 아닌 농지(임차농업인)를 적법한 권원으로 점유 또는 사용한 농지를 증명하는 서류 **필수**	※ 임대차계약이 9.30일 이전에 종료하거나 기본직불 신청인과 농지의 임차인이 다른 경우 ▸ 임대차계약의 신규·갱신이 필요한 경우 읍·면·동을 통해 농지대장 현행화 요청 * 신청인과 대부계약서 당사자와 상이한 경우 ▽ 동일경영체에 속한 세대원, ▽ 농가 구성원이 농지를 분할한 것이 아닌 경우는 제외 ▸ 다만, 종중소유 농지(회의록에 실경작자에게 임대), 재산세 납부증명(또는 재산세납부자와 임대차계약) + ‘무단점유가 아님을 증명하는 확인서’ 등이 제출하는 경우 1년 단위로 인정(~ ‘24년)
3. 승계대상자	※ 승계대상자는 우선 농업경영정보를 변경등록 ▸ 승계 사유 발생 직전 1년 이상 기본직불 등록자와 주소를 같이 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주민등록등본(사망자 및 본인의 주민등록초본) ▸ 직전(지급) 연도 기본직불 등록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4. 신규대상자, 관외경작자 **필수**	▸ 농지소재지의 이·통장 및 마을 농업인 2인 이상(총 3인 이상)으로 발급받은 ” 경작사실확인서 “
5. 금년도 기본직불 등록자 신청농지의 면적합이 직전년도 신청면적합 보다 적은 경우	※ 거짓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농지를 분할하여 신청이 확인된 경우 등록거절 또는 부정수급 처리 ▸ 직전 연도 지급대상 농지의 매매계약 등 소유권 이전 증명자료 :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계약서, 부동산거래계약서 신고필증, 취등록세 납부영수증 등 ▸ 직전 연도 지급대상 농지의 임대차 종료 : 시스템 확인, 임대차계약서 ▸ 농지전용 등으로 농지의 형상 및 기능이 종료된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농지전용 관련 자료, 시스템 검증 ▸ 타인에게 임대한 경우 : 「농지법」에 따른 임대차계약 정보

○ 제출방법 : 관련 서류를 사전에 준비하여 신청하는 농업인이 직접 읍·면·동에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나 지역 여건에 따라 이·통장 등을 통하여 대리 신청 가능

- 임대차계약서 등 신청 기간 내에 준비가 어려우면 기본직불 등록신청서를 우선 관할 읍·면·동에 제출하고 9.10일 이내 보완

6. 유의 사항

가. 코로나-19 방역 수칙 준수

○ 관할 읍·면·동에 방문하여 기본직불 등록신청서 등을 제출하고자 할 경우 접수 일정 및 코로나-19 상황 등을 사전에 확인

○ 읍·면·동 등을 방문할 때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현장 진행요원의 지시에 협조

나. 기본직불 등록신청정보 변경등록

○ 농업인이 신청한 기본직불 등록정보에 대한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 관할 읍·면·동에 9.10일까지 변경등록 가능

○ 농지 분·합필 등으로 추가·제외 등 변경이 필요할 경우 관할 읍·면·동사무소 담당자에게 농업경영체 변경등록 요청

○ 농업인은 기본직불금 등록사항에 대한 검증결과 읍면동에서 추가 확인 또는 서류제출을 요청하는 경우 적극 협조

* 자격요건이 부적격 또는 제출서류 미보완 등일 경우 관련 내용 안내 및 보완요청

다. 준수사항 및 부정수급 관련

○ 기본직불금 등록자는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하여 부여된 준수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함

* 준수사항 이행점검 결과 위반이 확인된 경우 기본직불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액하여 지급

○ 기본직불 등록신청자는 실경작하는 농업인 등에게 지원하는 보조사업으로 허위서류 제출, 부정한 농지 분할 등에 대한 점검이 강화될 예정이며 적발될 경우 관련 법에 따라 처벌*

* ① 허위 등록시 3년 또는 5년간 등록 제한, ② 허위로 신청하여 직불금 수령시 전액 환수하고 5배의 제재부가금을 부과 및 5년 또는 8년간 등록 제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지 소재지 읍·면·동사무소 또는 공익직불제 콜센터(1644-8778)에 문의하시거나, 농림사업정보시스템(www.agrix.go.kr) 에서 사업시행지침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선군 공고 제2023-131호

정선군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정선군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정선군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23년 2월 6일

정 선 군 수

1. 개정이유

○ 정선의 고향이미지(아리랑, 정겨움, 시골, 어머니)와 웰니스 자원(자연, 숲, 치유, 힐링)을 결합한 디자인 브랜드를 개발하고

○ 기존 『보고싶다 정선아』 슬로건과 연계한 마케팅을 통한 정선군의 브랜드 사업을 선점하고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개발한 『국민고향 정선』 관광 브랜드 슬로건에 대하여 관련 조례에 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정선군 브랜드 슬로건에 『국민고향 정선』을 [별표5]에 추가로 신설

3. 일부개정조례안 : “별첨”

4. 입법예고 : 2023. 2. 7. ~ 2023. 2. 17.(10일)

5. 의견제출

가. 제출사항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제출자의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나. 제출기일 : 2023년 2월 17일 까지

다. 제출기관 및 문의처 : 정선군청 기획관실
- 연락처 : 전화(033-560-2216), 팩스(033-560-2592)
- E-mail : hyeo1201@korea.kr, 홈페이지 : http://www.jeongseon.go.kr
- 주 소 : (23161) 정선군 정선읍 봉양3길 21 정선군청 기획관실

라. 제출방법 : 우편, 팩스, 직접방문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정선군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개정조례안 내용	찬성여부		의 견	비고
	찬 성	반 대		

정선군 조례 제 호

정선군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선군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5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5]

정선군 브랜드슬로건

1. 브랜드 마크(Brand Mark)

○ 아리아리! 정선은 즐거움과 흥, 정선사람의 따뜻함을 의미하는 레드색상을 바탕으로 굽이굽이 흐르는 강과 산세의 자연형상과 흥에 겨운 아리랑 가락을 곡선으로 강조하여 전통과 미래가 조화를 이룬 역동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정선을 표현

2. 여행 브랜드 마크(Brand Mark)

○ 보고싶다 정선아는 ‘정선’을 사람의 이름으로 부름으로써 관광객들에게 친근하게 다가가기 위해 개발한 정선여행 브랜드 슬로건이다.
보고싶다는 만나보고 싶다, 가보고 싶다, 먹어보고 싶다, 느껴보고 싶다 등 다양한 의미가 함축되어 있다.

3. 관광 브랜드 마크 (국민 고향 정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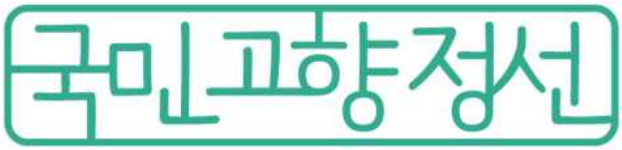

○ 국민고향정선은 정선의 따듯하고 정이 넘치는 고향 같은 이미지를 ‘정선 = 고향’이라는 의미를 전달하기 위한 정선 관광 브랜드 슬로건이다.
정선의 청정자연을 반영한 민트 컬러, 가로획이 길게 이어지는 타이포그래피로 자연과 사람을 잇는 고향 역할을 표현하였다.

관계법령 발췌

□ 「지방자치법」
제28조(조례)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란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② 생 략

정선군 공고 제2023-139호

정선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정선군 하수도 사용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정선군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년 2월 6일

정 선 군 수

1. 개정이유

환경부의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제도 개선방안」과 국민권익위위원회 「물 환경 관련 부담금 조례 불합리 개선방안」등을 반영하여 폐수배출시설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부과를 위한 오수 발생량 산정 및 원인자부담금 납부방법 확대 등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공공하수도 사용료 및 원인자부담금 납부시 기존 고지서 납부에서 신용카드, 직불카드, 전자결재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함. (안 제16조제1항 개정, 조례 제20조제1항 제6호 다목, 라목 신설, 조례 제22조제4항 신설)

나. 하수처리장으로 유입되는 폐수에 대한 오수발생량 및 단위단가 산정기준 마련하고 원인자부담금 산정식에 포함된 생산자 물가상승률을 산술평균으로 산정하는 것을 기하평균을 적용하는 것으로 개정(안 제20조제1항, 별표4, 별표 5 개정)

다. 일정 기간 동안만 사용하는 가설건축물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감면 규정 신설 (안 제21조제3항, 제4항)

3. 일부개정조례안 : “별첨”

4. 신·구조문 대비표 : “별첨”

5. 관계법령 발췌서 : “별첨”

가.「하수도법」제61조(원인자부담금 등)

나.「물환경보전법」시행규칙 [별표4] 폐수배출시설

6. 의견서 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간 : 2023. 2. 6. ~ 2023. 2. 26(20일간)

나. 제출내용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방법 : 서면, 우편, 팩스, 이메일 등

라. 제출기관 : 정선군 상하수도사업소(시설운영)
- 주 소 : 정선군 정선읍 정선로 1047
- 전화번호 : 033-560-2939
- 팩스번호 : 033-560-2940(발송 후 수신확인 요망)
- 전자메일 : env331@korea.kr

마.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정선군 상하수도사업소 시설운영팀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정선군 하수도 사용 조례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개정안 내용	찬성여부		의 견	비고
	찬성	반대		

정선군 조례 제 호

정선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선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 중 “징수한다”를 “징수하며, 납부대상자는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로 한다.

제20조의 제목 “(개별건축물 등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을 “(건축물 등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제1호 중 “적용하여”를 “적용하여 산정하되,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유입하는 폐수배출시설의 오수발생량은 인허가 받은 폐수배출량을 적용하여”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군보 또는 일간신문 등에”를 “군보, 게시판, 일간신문 중 하나 이상에 공고하고, 인터넷에도”로 하고, 같은 항 제6호가목 중 “개축·재축 및 건축물 용도변경”을 “개축·재축, 용도변경, 폐수배출시설 설치 및 변경설치”로, “인허가시”를 “인허가시 개산액을 통보하고, 건축물 등의 준공신청 시 최종 금액을 산정하여”로 하며, 같은 호에 다목 및 라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사업기간이 1년 이상이고 원인자부담금의 총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납부대상자의 신청에 따라 3회의 범위 내에서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다.

라. 납부대상자는 원인자부담금을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③ 원인자부담금 부과예정인 건축물 등을 건축하기 위해 설치되는 가설건축물의 오수발생량이 건축예정인 건축물 등으로 인해 새롭게 배출되거나 증가되는 오수량을 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가설건축물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④ 제3항에서 규정한 가설건축물 외의 경우에는 존치기간을 고려하여, 원인자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으며, 존치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전액 부과한다. 다만, 존치기간이 연장될 때에는 연장되는 기간을 계산하여 추가 부과한다.

1. 존치기간 1년 미만 : 100분의 70 감면
2. 존치기간 1년 이상 3년 미만 : 100분의 50 감면
3. 존치기간 3년 이상 5년 미만 : 100분의 30 감면

제22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원인자부담금은 타행위 개발계획 승인 시 개산액을 통보하고 준공검사 신청 시 최종 금액을 산정하여 부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분할납부 및 납부방법에 관한 사항은 제20조제1항의 다목, 라목을 따른다.

별표 2, 별표 4, 별표 5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2]

수질하수도사용료 산정기준(제15조제3항)

□ 대상항목 : BOD 또는 COD, SS

□ 사용료 산정기준

◦ 수질하수도사용료는 「물환경보전법」 제3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4조의 배출허용기준 농도와 「물환경보전법」 제32조제8항의 별도 배출허용기준 농도의 차이에 대하여 산정한다.

◦ BOD 또는 COD 값 중 큰 값을 적용하여야 하며, SS 값은 그대로 적용한다.

◦ 폐수배출량은 「물환경보전법」 제38조의2에 따라 설치된 측정기기에 의거 산정한다.

□ 수질하수도사용료

◦ 수질하수도사용료(원) = 오염부하량[수질초과농도(㎎/L)×시간당 폐수배출량(㎥/시간)]

$\times \frac{1}{1000}$(kg/g) × 1일조업시간(시간/일) × 30일 × kg단가(원/kg)

※ 1일 조업시간은 측정하기 전 배출시설의 최근 조업한 30일간의 조업시간 평균치를 적용한다.

[별표 4]

건축물 등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부과오수량 산정 예
(제20조제1항 및 제22조제2항)

(오수량 : ㎥/일)

구 분	최초 행정행위시 오수발생량 (A)	1차 증축·용도변경				2차 증축·용도변경			
		증가량 (B)	총오수량 (C) (A+B)	부과량 (D)	적용방법	증가량 (E)	총오수량 (F) (C+E)	부과량 (G)	적용방법
기존 건축물의 증축 및 용도변경	0 ※기존건축물 오수발생량은 0으로 봄	3	3	-	(B)<10 미부과	1	4	-	(B)+(E)<10 미부과
						6	9	-	
						12	15	12	(E)>10 전체부과
		7	7	-	(B)<10 미부과	2	9	-	(B)+(E)<10 미부과
						7	14	4	(B)+(E)>10 초과량부과
						11	18	11	(E)>10 전체부과
		11	11	11	(B)>10 전체부과	4	15	-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 건축물의 오수발생량은 0으로 봄
						7	18	-	
						11	22	11	
법시행일 이후 신축 건축물	5 (미부과)	3	8	-	(A)+(B)<10 미부과	1	9	-	(A)+(B)+(E)<10 미부과
						7	15	5	A)+(B)+(E)>10 초과량부과
						12	20	12	(E)>10 전체부과
		7	12	2	(A)+(B)>10 초과량부과	1	13	-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 건축물의 오수발생량은 0으로 봄
						6	18	-	
						12	24	12	
		11	16	11	(B)>10 전체부과	1	17	-	
						6	22	-	
						12	28	12	
	10 (부과)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 건축물 오수발생량은 0으로 봄	3	13	-	(B)<10 미부과	3	16	-	기존건축물과 같은 방식으로 원인자부담금 부과량 산정
						6	19	-	
						12	25	12	
		7	17	-	(B)<10 미부과	2	19	-	
						6	23	3	
						12	29	12	
		11	21	11	(B)>10 전체부과	2	23	-	
						6	27	-	
						12	33	12	

주) 1. 신축 후 2년 이내(준공일 기준)에 증축·개축 및 용도변경, 폐수배출시설 설치, 변경 설치 등의 경우는 전체 오수발생량을 합산

2. 수회에 걸쳐 신축+증축·용도변경, 폐수배출시설 설치, 변경 설치 등으로 오수증가량이 10㎥ 이상인 경우 : 초과량부과

3. 각각의 신축·증축·용도변경·폐수배출시설 설치·변경 설치 행위로 오수발생(증가)량이 10㎥ 이상인 경우 : 오수발생(증가)량 전체부과

4. 부과오수량은 소수점 2자리까지 산정하고 3자리 이하는 절사한다.

5. 용도변경은 건축법상의 용도변경 외에 오수발생량의 변경이 수반되는 경우도 전부 포함

6.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유입하는 폐수는 인허가 받은 폐수배출시설의 폐수배출량과 건축물 오수발생량을 합산하여 부과(산정 예 : 폐수 7㎥, 오수 5㎥ 발생 시 12㎥ 부과)

[별표 5]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산정방식
(제20조제1항 및 제22조제2항)

○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시설용량, 총사업비, 생산자 물가상승률(α)을 고려하여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text{단위단가} = \frac{\text{공공하수처리시설 총사업비(원)}}{\text{공공하수처리시설 시설용량}(m^3/\text{일})} \times \alpha$$

▹ $\alpha = (1+R_1)\times\cdots\times(1+R_n)$

▹ R(%) : 전년대비 물가상승률
n : 공공하수도 설치 준공 이후 경과연수

※ 공공하수처리시설〔공공하수처리시설 계획에 포함하여 설치한 차집관로(간선관로)를 포함한다.〕총사업비는 부지매입비, 설계비, 감리비, 시공비 등 총 소요된 금액으로 한다.

※ 시 전체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사업비 및 시설용량을 합산하여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를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신설하는 타행위 사업의 경우 당해 신설하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사업비 및 시설용량에 대해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를 산정한다.

○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유입하는 폐수배출시설 오수발생량의 수질이 공공하수처리시설의 계획유입수질 이하인 경우, 위의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와 **동일하게** 산정한다.

○ 다만,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유입하는 폐수배출시설 오수발생량의 수질이 공공하수처리시설의 계획유입수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수질오염 부과계수(β)를 고려하여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를 산정할 수 있다.

$$\text{단위단가} = \frac{\text{공공하수처리시설 총사업비(원)}}{\text{공공하수처리시설 시설용량}(m^3/\text{일})} \times \alpha \times (1+\beta)$$

▹ $\alpha = (1+R_1)\times\cdots\times(1+R_n)$

▹ R(%) : 전년대비 물가상승률
n : 공공하수도 설치 준공 이후 경과연수

▹ 수질오염부과계수$(\beta) = f(C)$

$$= f(\frac{\text{연계처리폐수의수질}}{\text{공공하수처리시설의계획유입수질}})$$

- 수질오염 부과계수(β)는 공공하수처리시설 계획유입수질(TOC 또는 BOD)에 대한 연계처리 대상이 되는 폐수(1차 처리수 포함) 수질의 비율(C)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 연계처리 폐수의 배출농도를 파악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지역의 배출허용기준 또는 별도배출허용기준을 고려하여 수질오염 부과계수를 산정한다.

- 수질오염 부과계수는 오염물질 부하에 따라 다음과 같이 표준값을 정할 수 있고, 지자체의 여건에 따라 하수처리장 설치비용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

< 수질오염 부과계수(표준값 예시) >

유기물질 농도 비율(C)	1.0 이하	1.0<C≦1.3	1.3<C≦1.7	1.7<C≦2.0	2.0 초과
수질오염 부과계수(β)	0	0.1	0.2	0.3	0.4

- 수질오염 부과계수는 유기물질(TOC 또는 BOD)의 농도를 기준으로 하되, 다른 항목(SS, TN, TP)이 계획유입수질을 초과하여 이를 동시에 고려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초과하는 각 항목별 수질오염 부과계수 중에서 최대값을 적용할 수 있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6조(공공하수도 사용료의 납기와 징수방법) ① 공공하수도의 사용료는 상수도 급수사용료와 납기를 같이하며, 수도요금 고지서에 함께 고지하여 동시에 징수한다.	제16조(공공하수도 사용료의 납기와 징수방법) ① ---------- ---------- ---------- ---------- 징수하며, 납부대상자는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20조(개별건축물 등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①법 제6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인자부담금의 산정기준·징수방법 등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제20조(건축물 등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①---------- ---------- ---------- ----.
1. 오수발생량은 「하수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4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시한 오수발생량 산정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1. ---------- ---------- ---------- ---------- -- 적용하여 산정하되,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유입하는 폐수배출시설의 오수발생량은 인허가 받은 폐수배출량을 적용하여 ---.
2.·3. (생 략)	2.·3. (현행과 같음)
4. 오수발생량 1㎥/일에 대한 원	4. ----------

인자부담금 단위단가는 별표 5의 산정방식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군보 또는 일간신문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 ---------- ---------- -- 군보, 게시판, 일간신문 중 하나 이상에 공고하고, 인터넷에도 --------.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6. 원인자부담금의 징수방법 및 시기 등은 다음과 같이 한다.	6. ----------.
가. 부과시기는 건축물의 신축, 증축, 개축·재축 및 건축물 용도변경 등에 대한 인허가시 부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구체적인 사항은 조례시행규칙에서 정한다.	가. ------ 개축·재축, 용도변경, 폐수배출시설 설치 및 변경설치 ---------- 인허가시 개산액을 통보하고, 건축물 등의 준공신청 시 최종 금액을 산정하여 ----.
나. (생 략)	나. (현행과 같음)
<신 설>	다. 사업기간이 1년 이상이고 원인자부담금의 총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납부대상자의 신청에 따라 3회의 범위 내에서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다.
<신 설>	라. 납부대상자는 원인자부담금을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 등의 방법으로 납부

	할 수 있다.
②(생 략)	②(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원인자부담금 부과예정인 건축물 등을 건축하기 위해 설치되는 가설건축물의 오수발생량이 건축예정인 건축물 등으로 인해 새롭게 배출되거나 증가되는 오수량을 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가설건축물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신 설>	④ 제3항에서 규정한 가설건축물 외의 경우에는 존치기간을 고려하여, 원인자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으며, 존치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전액 부과한다. 다만, 존치기간이 연장될 때에는 연장되는 기간을 계산하여 추가 부과한다. 1. 존치기간 1년 미만 : 100분의 70 감면 2. 존치기간 1년 이상 3년 미만 : 100분의 50 감면 3. 존치기간 3년 이상 5년 미만 : 100분의 30 감면
제22조(타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① ~ ③(생 략)	제22조(타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① ~ ③(현행과 같음)

④원인자부담금은 타행위 개발계획 승인시 부과하고 준공전 납부토록 한다.	④ 원인자부담금은 타행위 개발계획 승인 시 개산액을 통보하고 준공검사 신청 시 최종 금액을 산정하여 부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분할납부 및 납부방법에 관한 사항은 제20조제1항의 다목, 라목을 따른다.

<변경 전> [별표 2]

수질하수도사용료 산정기준(제15조제3항)

□ 대상항목 : BOD 또는 COD, SS

□ 사용료 산정기준

◦ 수질하수도사용료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법률」 제32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34조의 배출허용기준 농도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법률」 제32조제8항의 별도 배출허용기준 농도의 차이에 대하여 산정한다

◦ BOD 또는 COD 값 중 큰 값을 적용하여야 하며, SS 값은 그대로 적용한다.

◦ 폐수배출량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법률」 제3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측정기기에 의거 산정한다.

□ 수질하수도사용료

◦ 수질하수도사용료(원) = 오염부하량[수질초과농도(㎎/L)×시간당 폐수배출량(㎥/시간)] × $\frac{1}{1000}$(kg/g) × 1일조업시간(시간/일) × 30일 × kg단가(원/kg)

※ 1일 조업시간은 측정하기 전 배출시설의 최근 조업한 30일간의 조업시간 평균치를 적용한다.

<변경 후>[별표 2]

수질하수도사용료 산정기준(제15조제3항)

□ 대상항목 : BOD 또는 COD, SS

□ 사용료 산정기준

◦ 수질하수도사용료는 「물환경보전법」 제32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34조의 배출허용기준 농도와 「물환경보전법」 제32조제8항의 별도 배출허용기준 농도의 차이에 대하여 산정한다

◦ BOD 또는 COD 값 중 큰 값을 적용하여야 하며, SS 값은 그대로 적용한다.

◦ 폐수배출량은 「물환경보전법」 제3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측정기기에 의거 산정한다.

□ 수질하수도사용료

◦ 수질하수도사용료(원) = 오염부하량[수질초과농도(㎎/L)×시간당 폐수배출량(㎥/시간)] $\times \frac{1}{1000}$ (kg/g) × 1일조업시간(시간/일) × 30일 × kg단가(원/kg)

※ 1일 조업시간은 측정하기 전 배출시설의 최근 조업한 30일간의 조업시간 평균치를 적용한다.

<변경 전> [별표 4]

건축물등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부과오수량 산정 예
(제20조제1항 및 제22조제2항)

(오수량 : ㎥/일)

구 분	최초 행정행위시 오수발생량(A)	1차 증축·용도변경				2차 증축·용도변경			
		증가량 (B)	총오수량 (C) (A+B)	부과량 (D)	적용방법	증가량 (E)	총오수량 (F) (C+E)	부과량 (G)	적용방법
기존 건축물의 증축 및 용도변경	0 ※기존 건축물 오수발생량은 0으로 봄	3	3	-	(B)<10 미부과	1	4	-	(B)+(E)<10 미부과
						6	9	-	
						12	15	12	(E)>10 전체부과
		7	7	-	(B)<10 미부과	2	9	-	(B)+(E)<10 미부과
						7	14	4	(B)+(E)>10 초과량부과
						11	18	11	(E)>10 전체부과
		11	11	11	(B)>10 전체부과	4	15	-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 건축물의 오수발생량은 0으로 봄
						7	18	-	
						11	22	11	
법시행일 이후 신축 건축물	5 (미부과)	3	8	-	(A)+(B)<10 미부과	1	9	-	(A)+(B)+(E)<10 미부과
						7	15	5	A)+(B)+(E)>10 초과량부과
						12	20	12	(E)>10 전체부과
		7	12	2	(A)+(B)>10 초과량부과	1	13	-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 건축물의 오수발생량은 0으로 봄
						6	18	-	
						12	24	12	
		11	16	11	(B)>10 전체부과	1	17	-	
						6	22	-	
						12	28	12	
	10 (부과)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 건축물 오수발생량은 0으로 봄	3	13	-	(B)<10 미부과	3	16	-	기존건축물과 같은 방식으로 원인자부담금 부과량 산정
						6	19	-	
						12	25	12	
		7	17	-	(B)<10 미부과	2	19	-	
						6	23	3	
						12	29	12	
		11	21	11	(B)>10 전체부과	2	23	-	
						6	27	-	
						12	33	12	

주) 1. 신축 또는 신축+증축·용도변경 등으로 오수발생량이 10톤 미만인 경우 : 미부과
2. 수회에 걸쳐 신축+증축·용도변경 등으로 오수증가량이 10톤 이상인 경우 : 초과량부과
3. 각각의 신축증축용도변경 행위로 오수발생(증가)량이 10톤 이상인 경우 : 오수발생(증가)량 전체부과

<변경 후>[별표 4]

건축물 등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부과오수량 산정 예
(제20조제1항 및 제22조제2항)

(오수량 : ㎥/일)

구 분	최초 행정행위시 오수발생량 (A)	1차 증축·용도변경				2차 증축·용도변경			
		증가량 (B)	총오수량 (C) (A+B)	부과량 (D)	적용방법	증가량 (E)	총오수량 (F) (C+E)	부과량 (G)	적용방법
기존 건축물의 증축 및 용도변경	0 ※기존 건축물 오수발생량은 0으로 봄	3	3	-	(B)<10 미부과	1	4	-	(B)+(E)<10 미부과
						6	9	-	
						12	15	12	(E)>10 전체부과
		7	7	-	(B)<10 미부과	2	9	-	(B)+(E)<10 미부과
						7	14	4	(B)+(E)>10 초과량부과
						11	18	11	(E)>10 전체부과
		11	11	11	(B)>10 전체부과	4	15	-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 건축물의 오수발생량은 0으로 봄
						7	18	-	
						11	22	11	
법시행일 이후 신축 건축물	5 (미부과)	3	8	-	(A)+(B)<10 미부과	1	9	-	(A)+(B)+(E)<10 미부과
						7	15	5	A)+(B)+(E)>10 초과량부과
						12	20	12	(E)>10 전체부과
		7	12	2	(A)+(B)>10 초과량부과	1	13	-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 건축물의 오수발생량은 0으로 봄
						6	18	-	
						12	24	12	
		11	16	11	(B)>10 전체부과	1	17	-	
						6	22	-	
						12	28	12	
	10 (부과)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 건축물 오수발생량은 0으로 봄	3	13	-	(B)<10 미부과	3	16	-	기존건축물과 같은 방식으로 원인자부담금 부과량 산정
						6	19	-	
						12	25	12	
		7	17	-	(B)<10 미부과	2	19	-	
						6	23	3	
						12	29	12	
		11	21	11	(B)>10 전체부과	2	23	-	
						6	27	-	
						12	33	12	

주) 1. 신축 후 2년 이내(준공일 기준)에 증축·개축 및 용도변경, 폐수배출시설 설치, 변경 설치 등의 경우는 전체 오수발생량을 합산

2. 수회에 걸쳐 신축+증축·용도변경, 폐수배출시설 설치, 변경 설치 등으로 오수증가량이 10㎥ 이상인 경우 : 초과량부과

3. 각각의 신축·증축·용도변경·폐수배출시설 설치·변경 설치 행위로 오수발생(증가)량이 10㎥ 이상인 경우 : 오수발생(증가)량 전체부과

4. 부과오수량은 소수점 2자리까지 산정하고 3자리 이하는 절사한다

5. 용도변경은 건축법상의 용도변경 외에 오수발생량의 변경이 수반되는 경우도 전부 포함

6.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유입하는 폐수는 인허가 받은 폐수배출시설의 폐수배출량과 건축물 오수발생량을 합산하여 부과(산정 예 : 폐수 7㎥, 오수 5㎥ 발생 시 12㎥ 부과)

<변경 전> [별표 5]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산정방식(제20조제1항 및 제22조제2항)

○ ㎥당 원인자부담금 = $\frac{\text{공공하수처리시설 총사업비(원)}}{\text{공공하수처리시설 시설용량}(m^3/\text{일})} \times \alpha$

▹ $\alpha = \left(1 + \frac{\text{공공하수도 설치 준공 이후 연평균 생산자물가 상승률}}{100}\right)^n$

▹ n : 공공하수도 설치 준공 이후의 경과연수

※ 공공하수처리시설〔공공하수처리시설 계획에 포함하여 설치한 차집관거(간선관거) 를 포함한다.〕총사업비는 부지매입비, 설계비, 감리비, 시공비 등 총 소요된 금액으로 한다.

※ 시·군 내 2이상의 공공하수처리시설이 존재하는 경우 시·군 내 전체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사업비 및 시설용량을 합산하여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를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변경 후> [별표 5]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산정방식
(제20조제1항 및 제22조제2항)

○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시설용량, 총사업비, 생산자 물가상승률(α)을 고려하여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text{단위단가} = \frac{\text{공공하수처리시설 총사업비(원)}}{\text{공공하수처리시설 시설용량}(m^3/\text{일})} \times \alpha$$

▹ $\alpha = (1+R_1)\times\cdots\times(1+R_n)$

▹ R(%) : 전년대비 물가상승률
n : 공공하수도 설치 준공 이후 경과연수

※ 공공하수처리시설〔공공하수처리시설 계획에 포함하여 설치한 차집관로(간선관로)를 포함한다.〕총사업비는 부지매입비, 설계비, 감리비, 시공비 등 총 소요된 금액으로 한다.

※ 시 전체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사업비 및 시설용량을 합산하여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를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신설하는 타행위 사업의 경우 당해 신설하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사업비 및 시설용량에 대해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를 산정한다.

○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유입하는 폐수배출시설 오수발생량의 수질이 공공하수처리시설의 계획유입수질 이하인 경우, 위의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와 **동일하게** 산정한다.

○ 다만,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유입하는 폐수배출시설 오수발생량의 수질이 공공하수처리시설의 계획유입수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수질오염 부과계수(β)를 고려하여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를 산정할 수 있다.

$$\text{단위단가} = \frac{\text{공공하수처리시설 총사업비(원)}}{\text{공공하수처리시설 시설용량}(m^3/\text{일})} \times \alpha \times (1+\beta)$$

▹ $\alpha = (1+R_1)\times\cdots\times(1+R_n)$

▹ R(%) : 전년대비 물가상승률
n : 공공하수도 설치 준공 이후 경과연수

▹ $\text{수질오염 부과계수}(\beta) = f(C)$

$$= f\left(\frac{\text{연계처리 폐수의 수질}}{\text{공공하수처리시설의 계획유입수질}}\right)$$

- 수질오염 부과계수(β)는 공공하수처리시설 계획유입수질(TOC 또는 BOD)에 대한 연계처리 대상이 되는 폐수(1차 처리수 포함) 수질의 비율(C)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 연계처리 폐수의 배출농도를 파악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지역의 배출허용기준 또는 별도배출허용기준을 고려하여 수질오염 부과계수를 산정한다.

- 수질오염 부과계수는 오염물질 부하에 따라 다음과 같이 표준값을 정할 수 있고, 지자체의 여건에 따라 하수처리장 설치비용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

< 수질오염 부과계수(표준값 예시) >

유기물질 농도 비율(C)	1.0 이하	1.0<C≦1.3	1.3<C≦1.7	1.7<C≦2.0	2.0 초과
수질오염 부과계수(β)	0	0.1	0.2	0.3	0.4

- 수질오염 부과계수는 유기물질(TOC 또는 BOD)의 농도를 기준으로 하되, 다른 항목(SS, TN, TP)이 계획유입수질을 초과하여 이를 동시에 고려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초과하는 각 항목별 수질오염 부과계수 중에서 최대값을 적용할 수 있다.

관계법령 발췌서

❑ 하수도법

제61조(원인자부담금 등)

①공공하수도관리청은 건축물 등을 신축·증축하거나 용도변경하여 오수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양 이상 증가되는 경우 해당 건축물 등의 소유자(건축 또는 건설 중인 경우에는 건축주 또는 건설주체를 말한다)에게 공공하수도 개축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다.

②공공하수도관리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타공사 또는 공공하수도의 신설·증설 등을 수반하는 개발행위(이하 “타행위”라 한다)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공공하수도에 관한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공사 또는 타행위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자에게 부담시키거나 필요한 공사를 시행하게 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산정기준·징수방법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 등의 방법으로 낼 수 있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징수한 원인자부담금은 공공하수도의 신설, 증설, 이설, 개축 및 개수 등 공사에 드는 비용으로만 사용할 수 있다.

❑ 하수도법 시행령

제61조(원인자부담금 등)

①법 제6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양 이상 증가되는 경우"란 하루에 10세제곱미터 이상 증가되는 경우를 말한다.

②법 제6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타공사 또는 공공하수도의 신설·증설 등을 수반하는 개발행위”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것을 말한다.

1. 타공사

공공하수도를 이설·보수·개수하게 하는 원인을 제공한 공공하수도 외의 상수도관, 가스관, 통신관, 전주 및 도로·철도 등의 설치공사

2. 공공하수도의 신설·증설 등을 수반하는 개발행위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 도시개발사업(「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주택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택지개발촉진법」 및 「도시개발법」 등에 따른 개발사업 등)의 수행

나. 산업단지조성사업(「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및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법률」 등에 따른 산업단지 조성사업 등)의 수행
다. 공항건설사업의 수행
라. 관광지·관광단지의 개발사업(「관광진흥법」, 「온천법」 및 「자연공원법」 등에 따른 개발사업 등)의 수행
마. 그 밖에 하수처리구역에 포함되지 아니한 지역의 개발행위자가 하수처리구역으로 포함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 공공하수도의 신설·증설 등이 필요한 행위

❑ 물환경보전법시행규칙 [별표 4]

폐수배출시설(제6조 관련)

1. 폐수배출시설의 적용기준

가. 폐수배출시설은 다음의 구분에 따른 시설로 한다.

1) 특정수질유해물질이 포함된 폐수를 배출하는 시설의 경우: 1일 최대 폐수량이 0.01세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다만, 출판·인쇄시설, 자동식 사진처리시설, X-Ray시설과 귀금속 장신구 및 관련 제품 제조시설은 모두 폐수배출시설로 하고, 제2호의 2) 금속광업시설과 82) 제1호부터 제81호까지의 분류에 속하지 아니하는 시설은 시간당 최대 폐수량이 0.1세제곱미터 이상(「수도법」 제7조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이나 이에 인접한 지역으로서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역에서는 1일 최대 폐수량이 0.2세제곱미터 이상)인 시설을 폐수배출시설로 한다.

2) 특정수질유해물질이 포함되지 않은 폐수를 배출하는 시설의 경우: 1일 최대 폐수량이 0.1세제곱미터 이상인 시설[제2호의 2) 금속광업시설과 82) 제1호부터 제81호까지의 분류에 속하지 않는 시설은 시간당 최대 폐수량이 1세제곱미터 이상(「수도법」 제7조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이나 이에 인접한 지역으로서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역에서는 1일 최대 폐수량이 2세제곱미터 이상)인 시설을 폐수배출시설로 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폐수배출시설에서 제외한다.

가) 1일 최대 폐수량이 20세제곱미터 이하로서 광유류(석유 등 광물성원료로부터 얻어진 기름)가 포함되지 아니한 폐수를 「하수도법」 제2조제9호 및 제13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개인하수처리시설로 유입하는 경우
나) 1일 최대 폐수량이 20세제곱미터 이하로서 원폐수의 농도가 항상 그 시설에서 방류하는 하천의 환경기준(「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에 따른 환경기준을 말한다) 이내로 유지된다고 허가·신고기관이 인정하는 경우
다) 1일 최대 폐수량이 10세제곱미터 이하로서 원폐수 중 수질오염물질이 「하수도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이하 "공공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이라 한다) 항목의 수질오염물질만 배출되고, 그 수질오염물질의 농도가 항상 공공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 이하에 해당하는 것으로 허가·신고기관에서 인정하는 경우

나. 가목에서 "1일 최대 폐수량"은 연중 폐수가 가장 많이 발생되는 날을 기준으로 사업장의 모든 시설에서 배출되는 폐수를 합산하여 산정하고, 위탁처리·재이용하거나 폐수배출공정 중의 방지시설에서 처리되는 폐수를 모두 포함하여 산정하되, 다음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두부 및 떡 제조시설에서 발생되는 폐수를 「하수도법」 제2조제9호 및 제13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개인하수처리시설로 유입시키는 경우에는 두부 및 떡 제품을 식히거나 담근 폐수는 1일 최대 폐수량에서 제외한다.

2) 절삭유 등을 순환하여 재이용하는 일체형 기계나 시설로서 폐수가 순환 중에 그 기계나 시설의 외부로 유출되지 않는(더 이상의 재이용이 불가능하여 위탁처리 등을 위하여 반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단일 배출공정만 있는 경우에는 순환량이 아닌 그 기계나 시설에 딸린 저장시설의 용량으로 산정한다.

다. 가목 1)에서 "특정수질유해물질이 포함된 폐수를 배출하는 시설"이란 특정수질유해물질이 포함된 원료(용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부원료 또는 첨가물을 사용하는 시설로서 특정수질유해물질이 별표 13의2에 따른 기준 이상 포함된 폐수를 배출하는 시설을 말한다. 다만, 원료로 사용되거나 생산공정에서 사용되는 용수에만 특정수질유해물질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로서 그 용수에 포함되어 있는 특정수질유해물질이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에 따른 먹는물의 수질기준 중 수돗물의 수질기준 이하인 폐수배출시설은 가목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이 포함된 폐수를 배출하는 시설에서 제외한다.

2. 폐수배출시설의 분류

폐수배출시설	한국표준산업분류	포함 또는 제외시설
1) 석탄 광업시설	051	○ 채탄능력 8천 톤/월 미만의 시설은 제외한다. ○ 9차 한국표준산업분류 0809 기타 광업지원서비스시설 중 유무연탄 채굴지원서비스시설을 포함한다.

		○ 0729 그외 기타 비금속광물 광업시설 중 토탄채굴시설을 포함한다. ○ 19102 연탄 및 기타 석탄가공품 제조시설을 포함한다.
2) 금속 광업시설(채광된 광물의 가공처리시설)	06	○ 9차 한국표준산업분류 0809 기타 광업지원서비스시설 중 금속 광업지원서비스시설을 포함한다.
3) 비금속 광물 광업시설	07	○ 달리 분류되지 아니하는 광업 및 채석업 시설과 9차 한국표준산업분류 0809 기타 광업지원서비스시설 중 비금속 광업지원서비스시설을 포함한다. ○ 0729 토탄채굴시설은 1) 석탄 광업시설에 포함한다. ○ 연료용 광물 광업시설과 071 토사석 광업(채취·가공)시설로서 폐수를 해당 채취지점 또는 가공시설의 외부로 유출하지 아니하는 시설은 제외한다.
4) 도축, 육류·수산물 가공 및 저장·처리시설	101 102	○ 101 도축, 육류 가공 및 저장·처리시설에는 각종 육지동물을 도축 및 가공하여 신선·냉장·냉동한 고기를 생산하거나 육류를 건조·훈연·염장·염수장 및 기타 방법으로 가공 및 저장처리한 고기 가공품, 소시지 및 유사제품, 식용 또는 비식용의 짐승고기 분말 등을 생산하는 시설로서 가축·가금·조류·고래 및 수렵물 등의 도축시설을 포함한다. ○ 102 수산물 가공 및 저장·처리시설 중 해상에서 작업하는 시설과 별표 1에 따른 기타 수질오염원에 해당되는 시설은 제외한다.

5) 과실·채소 가공 및 저장·처리시설	103	○ 단순 물세척만 하거나 수송·보관을 위하여 소금절임만 하는 시설은 제외한다.
6) 동·식물성 유지제조시설	104	
7) 낙농제품 및 식용빙과류 제조시설	105	○ 조류의 알 세척시설은 제외한다.
8) 곡물 가공품 제조시설	1061	
9) 전분 및 당류 제조시설	1062	
10) 동물용 사료 및 조제식품 제조시설	108	
11) 설탕 제조시설	1072	
12) 조미료 및 식품첨가물 제조시설	1074	
13) 기타 식품 제조시설	1071 1073 1079	○ 두부 및 그 유사식품, 빵, 곡분과자, 국수 및 그 유사식품, 코코아 및 설탕과자제품, 커피·차류 및 조제 스프, 인삼제품, 건강식품, 달리 분류되지 아니하는 식료품 제조시설을 포함한다. ○ 1073 면류, 마카로니 및 유사식품 제조시설 중 자체 조리판매용시설은 제외한다. ○ 1071 떡, 빵 및 과자류 제조시설 중 100제곱미터 미만의 제과점·방앗간은 제외한다.
14) 알콜음료 제조시설	111	

15) 비알콜성 음료 및 얼음 제조시설	112	
16) 담배 제조시설	12	
17) 방적 및 가공사 제조시설	131 132 133	○ 1441 편조의복 액세서리 제조시설을 포함한다.
18) 섬유염색 및 가공시설	134	
19) 기타 섬유제품 제조시설	139	
20) 가죽·모피가공 및 제품 제조시설	142 151	
21) 신발 및 신발부분품 제조시설	152	
22)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시설	16	
23) 펄프·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시설	17	
24) 출판·인쇄·사진처리 및 기록매체 복제시설	18 581 592 733	○ 치과용 X-Ray, 수표촬영용 마이크로필름 처리시설 및 별표 1에 따른 기타 수질오염원에 해당하는 시설은 제외한다.
25) 코크스 및 연탄제조시설	191	○ 19102 연탄 및 기타 석탄가공품 제조시설은 1) 석탄 광업시설에 포함한다.

26) 석유정제품 제조시설	192	○ 석유저장, 석유증류(상압·감압), 석유전화(분해·개질), 석유정제, 윤활유 및 그리스 제조, 달리 분류되지 아니하는 석유정제 및 석유정제 부산물 재처리시설을 포함한다. ○ 석유저장시설은 석유정제·저유소로 한정한다. ○ 가스회수·염(鹽)류제거、황산화물 제거、납성분 제거、스트리핑(stripping: 휘발성분 제거)、스테빌라이즈(원유 등에 함유된 부탄보다 낮은 끓는점의 성분을 증류로 제거하여 증기압을 조절하기 위한 정류탑)·개질·접촉분해·수소첨가분해、이성화(異性化: 화합물을 형성하는 분자를 다른 물체로 변화시키는 화학반응)·알킬화·중합시설을 포함한다.
27) 석유화학계 기초화합물 제조시설	20111	○ 에틸렌 및 프로필렌계, 부틸렌계, 부타디엔계, 사이크로펜타디엔계, 이소프렌계, 방향족탄화수소계, 사이크로헥산계, 아세틸렌계, 달리 분류되지 아니하는 석유화학계, 기초화학물질 제조시설을 포함한다.
28) 석탄화합물 제조시설	20119	○ 20119 석탄화학계 화합물 및 기타 기초유기화학 물질 제조시설 중 석탄화합물 제조시설(8차 한국표준산업분류 24112의 석탄화합물 제조시설)에 한정한다.
29) 천연수지 및 나무화합물 제조시설	20112	

30) 기타 기초유기화합물 제조시설	20119	○ 20119 석탄화학계 화합물 및 기타 기초유기화학 물질 제조시설 중 석탄화합물 제조시설(8차 한국표준산업분류 24112의 석탄화합물 제조시설)은 28) 석탄화합물 제조시설에 포함한다.
31) 기초무기화학물질 제조시설	2012	○ 황산, 질산, 염산, 소다회, 수산화나트륨 및 알칼리, 암모니아합성 및 유도제품, 무기안료, 금속의 산화물, 수산화물 및 염, 화학원소 단체물질, 인산, 비금속의 산화물, 황화물, 할로겐화합물, 달리 분류되지 아니하는 기초무기화학물질 제조시설을 포함한다. ○ 우라늄, 토륨 등의 방사성 물질을 혼합·배합·농축하는 시설은 제외한다.
32) 산업용가스 제조시설	20121	○ 352 연료용 가스제조 및 배관공급시설 중 가스 제조시설을 포함한다.
33) 염료, 조제 무기안료, 유연제 및 기타 착색제 제조시설	20132	○ 식물성 염료추출물 제조시설을 포함한다.
34) 비료 및 질소화합물 제조시설	20311 20312 20313	

35) 합성고무 제조시설	20201	○ 재생섬유소 및 그 유도체 제조시설을 포함한다.
36) 합성수지 및 기타 플라스틱물질 제조시설	20202 20203	○ 재생섬유소 및 그 유도체 제조시설을 포함한다.
37)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시설	21	○ 의료용 화합물 및 생약제제 제조시설을 포함한다.
38) 살충제 및 기타 농약 제조시설	2032	
39) 잉크, 페인트, 코팅제 및 유사제품 제조시설	2041	
40) 계면활성제·치약·비누 및 기타 세제 제조시설	20421 20422	
41) 화장품 제조시설	20423	
42) 표면광택제 및 실내가향제 제조시설	20424	○ 왁스 제조시설을 포함한다.
43) 마그네틱 및 광학 매체, 사진용 화학제품 및 감광재료 제조시설	266 20491	○ 26293 전자카드 제조시설을 포함한다.
44) 가공염 및 정제염 제조시설	20492	
45) 방향유 및 관련제품 제조시설	20499	○ 20499 기타 분류되지 아니한 화학제품 제조시설 중 방향유 및 관련제품 제조시설

		(8차 한국표준산업분류 24392의 방향유 및 관련제품 제조시설)에 한정한다.
46) 접착제 및 젤라틴 제조시설	20493	
47) 화약 및 불꽃제품 제조시설	20494	
48) 바이오 연료 및 기타 분류되지 않은 화학제품 제조시설	20495	○ 20499 기타 분류되지 않은 화학제품 제조시설 중 방향유 및 관련제품 제조시설(8차 한국표준산업분류 24392의 방향유 및 관련제품 제조시설)은 45) 방향유 및 관련제품 제조시설에 포함한다.
49) 화학섬유 제조시설	205	
50)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 제품 제조시설	22	
51) 유리 및 유리제품 제조시설	231	
52) 도자기 및 기타 요업 제품 제조시설	232	
53) 시멘트·석회·플라스터 및 그 제품 제조시설	233	○ 레미콘차량은 관련 시설로 포함한다. ○ 수증기 양생공정만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54) 기타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시설	239	○ 석제품, 달리 분류되지 아니하는 비금속 광물 제조시설을 포함한다.
55) 1차 철강 제조시설	241	○ 제철, 제강, 열간압연(熱間壓延: 금속재료를 재결정온도 이상에서 하는 압연), 냉간압연, 압출 및 인발제품(금속관 등의 끝부분을 끌어당겨 지름, 관벽 두께를 감

		소시킨 제품), 철강선, 강관, 철강압연, 주철강관, 연신(원료를 가늘게 늘이는 공정) 및 제관시설(관을 만드는 시설)을 포함한다.
56) 합금철 제조시설	24113	
57) 비철금속 제련, 정련 및 합금 제조시설	2421	○ 구리·알루미늄·납·아연과 달리 분류되지 아니하는 비철금속 제련 및 정련시설을 포함한다.
58) 동 압연·압출 및 연신 제품 제조시설	24221	
59) 알루미늄 압연·압출 및 연신제품 제조시설	24222	
60) 기타 비철금속 압연, 압출 및 연신제품 제조시설	24229	
61) 기타 1차 비철금속 제조시설	2429	
62) 금속주조시설	243	
63) 금속가공제품 제조시설(달리 분류되지 아니하는 표준산업분류 25부터 31까지의 제조시설)	25	○ 주된 공정의 일부로서 공통시설의 도금시설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64) 절연선 및 케이블 제조시설	283	

65) 1차 전지 및 축전지 제조시설	282	
66) 전구 및 조명장치 제조시설	284	
67) 반도체 및 전자부품 제조시설	261 262	○ 26293 전자카드 제조시설은 제외한다.
68) 영상 및 음향기기 제조시설	265	
69) 가구 및 기타 제품 제조시설	32 33	○ 가구, 악기, 운동 및 경기용구, 귀금속(별표 1 제6호에 해당하는 금은 판매점의 세공시설은 제외한다)·장신구 및 관련 제품, 달리 분류되지 아니하는 장난감, 장식품 및 일용품 제조시설을 포함한다.
70) 화력발전시설	35113	○ 10만 킬로와트/시간 미만의 시설은 제외한다.
71) 수도사업시설	360	○ 역세(逆洗)를 하지 아니하고 물리적으로만 처리하는 수도사업시설은 제외한다. ○ 정수능력 1천 세제곱미터/일 미만의 시설은 제외한다.
72) 먹는샘물 제조시설	360	○ 세병(洗甁) 및 세척시설이 없는 먹는샘물 제조시설은 제외한다. ○ 취수능력 10세제곱미터/일 미만의 시설은 제외한다.
73) 수산물 판매장(면적 700제곱미터 이상)	46314 46315 47213 47214	○ 건어물·젓갈류를 판매하는 곳이 별도로 구획된 경우 또는 활어를 판매하는 시설, 수산물소매시설로서 발생되는 폐수를 「하수도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로 유입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74) 병원시설(병상의 수가 「의료법」에 따른 종합병원 규모 이상인 시설)	861	○ 수술실·처치실 및 병리실이 없는 병원과 한약을 끓이는 시설이 없는 한방병원은 제외한다.
75) 폐수처리업의 폐수저장시설 및 폐기물처리업의 폐수발생시설	381 382	○ 폐기물처리업의 폐수발생시설의 경우에는 해당 폐기물처리시설로 유입처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음식물류폐기물 재활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질오염물질을 에너지 생산에 이용하기 위하여 폐기물처리시설 중 매립시설에 유입하는 시설과 폐기물처리시설 중 혐기성(嫌氣性: 산소가 없을 때 생육하는 성질)분해시설에 유입하는 시설은 제외한다.
76) 세탁시설(용적 2세제곱미터 이상 또는 용수 시간당 1세제곱미터 이상)	9691	○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세탁물을 처리하기 위하여 사업장 안에 설치한 시설로서 특정수질유해물질이 함유되지 아니한 폐수를 공공하수처리시설 또는 개인하수처리시설로 유입시키는 시설은 제외한다.
77) 산업시설의 폐가스·분진, 세정·응축시설(분무량 또는 응축량이 시간당 0.01세제곱미터 이상)	공통시설	○ 「하수도법」 제2조제9호, 제10호 및 제13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분뇨처리시설 및 개인하수처리시설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처리시설, 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 폐기물처리업소의 시설로서 세정·응축수를 해당 처리시설로 유입처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78) 산업시설의 정수시설(정수능력이 1일 당 100세제곱미터 이상)	공통시설	○ 역세를 하지 아니하고 물리적으로만 처리하는 시설은 제외한다. ○ 수영장의 정수시설은 제외한다.

79) 이화학 시험시설(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	공통시설	○ 「하수도법」 제2조제9호, 제10호 및 제13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분뇨처리시설 및 개인하수처리시설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처리시설, 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 폐기물처리업소의 시설로서 실험폐수를 해당 처리시설로 유입처리하는 경우와 초등학교·중학교의 실험실은 제외한다. ○ 실험생산시설을 포함한다.
80) 도금시설	공통시설	○ 주공정이 도금공정인 시설을 말하며, 다른 공정의 일부로서 25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81) 운수장비 수선 및 세차 또는 세척시설	공통시설	○ 자동차·건설기계·열차·항공기 등 운송장비를 수선·세차 또는 세척하는 시설을 포함한다. ○ 별표 1의 기타 수질오염원과 「하수도법」 제2조제9호, 제10호 및 제13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분뇨처리시설 및 개인하수처리시설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처리시설, 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 및 폐기물처리업소에서 분뇨 및 폐기물 등을 운반하는 차량의 세척 과정 중 배출되는 폐수를 해당 처리시설에 유입·처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건설현장에 한시적으로 설치되는 세륜시설(바퀴 등의 세척시설)은 제외한다.
82) 제1호부터 제81호까지의 분류에 속하지 아니하는 시설	공통시설	○ 임가공시설과 383 금속 및 비금속 원료 재생시설은 원 생산 제품제조시설 분류와 같이 분류하되 별표 1의 기타 수질오염원에 해당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비고 : 포함 또는 제외시설란의 숫자는 특별한 설명이 없는 경우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분류번호를 말한다.

정선군 공고 제2023-170호

정선군 정선이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정선군 정선이 지원에 관한 조례 입법안”에 대한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정선군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3년 2월 13일

정 선 군 수

1. 제정이유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른 생활인구 증가를 위한 정선군만의 고유한 시책추진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전국의 ‘정선이’라는 특정 성명을 가진 사람을 지원하여 정선군 인구감소에 대응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2. 법적근거
가.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15조(생활인구의 확대 지원)
나. 지방자치법 제28조(조례)

3. 주요내용
가. ‘정선이’ 지원의 목적 및 정의 규정(안 제1~2조)
- 성명 중에 ‘정선’이 포함된 사람
나. 정선이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 (안 제3조)
다. 지원사항(안제4조)
- 정선군에서 설치·관리하는 관광시설 및 공공시설 이용료의 군민요금 적용
- 정선군 홍보여행
- 정선군 소식지 및 향토지 제공
라. ‘정선이’ 활동 사항에 대한 포상 (안제5조)
마. 정선이 지원 활성화를 위한 기관·단체 협력체계 구축(안제6조)

4. 제정 조례안 : 별첨

5. 입법예고 : 2023. 2. 13. ~ 2023. 3. 4.(20일간)

6. 의견제출

○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3년 3월4일(20일간)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정선군수(기획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의견

《 의견 제출 및 문의처 》

○ 주 소 : 정선군 정선읍 봉양3길 21, 정선군청 기획관실

○ 전 화 : 033 - 560 - 2253

○ F A X : 033 - 560 - 2592

○ E-mail : achtungi@korea.kr

○ 홈페이지 : http://www.jeongseon.go.kr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정선군 정선이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개 정 안	찬성여부		의 견	비고
	찬성	반대		

정선군 조례 제 호

정선군 정선이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선군의 생활인구를 늘리고 지역 활력을 도모하기 위해 정선이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정선이”란 성명 중에 “정선”이 포함된 사람을 말한다.

제3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정선군 정선이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해야 한다.

1. 정선이 지원에 관한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정선이 지원에 필요한 재원 마련에 관한 사항
3. 정선이 지원에 관한 홍보 및 활성화 방안
4. 정선군 관광자원의 활용 범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정선이 지원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지원사항) 군수는 정선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정선군에서 설치·관리하는 관광시설 및 공공시설 이용료의 군민요금 적용
2. 정선군 홍보여행
3. 정선군 소식지 및 향토지 제공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포상) 군수는 지원을 받은 정선이의 활동에 관하여 정선군 홍보·발전 등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경우에는 「정선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6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정선이 지원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15조(생활인구의 확대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구감소지역 내 생활인구를 확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시책 등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인구에 대하여 이 법에 따른 시책을 적용할 수 있다.

❑ 「지방자치법」

제28조(조례)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②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은 그 법령의 하위 법령에서 그 위임의 내용과 범위를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할 수 없다.

정선군 농업기술센터 기술연구과 공고 제2023-01호

화상병 사전예방을 과수 농작업자 이행준수 행정명령

화상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과수 농작업자 이행준수 행정명령」을「식물방역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시행합니다.

2023년 2월 10일

정 선 군 수

1. 행정명령 대상 : 정선군 과수(사과·배 등) 과원 소유(또는 경작)자, 농작업자, 관련산업 종사자

2. 행정명령 내용 : 다음 사항(10개 조항)을 준수할 것.
   가. 과수 농작업자 식물병해충 예방교육 이수 의무(연 1회 이상)
   나. 농작업 인력·장비·도구 등 소독 의무(과원 주변·출입구, 작업도구 등)
   다. 개화기 전·후 사전예방 약제 살포 의무(3회)
   라. 과수 건전 묘목 사용 및 유통 관리(건전 묘목 구입, 의심묘목 신고 등)
   마. 농가 자가 예찰 및 사전신고 의무
   바. 과수 경작자 영농일지 기록 의무
   사. 과수 농작업자 이동·작업 이력제 운영
   아. 매개곤충 및 야생동물 차단·접근 통제
   자. 화상병 발생지역 잔재물 이동 금지 및 폐기
   차. 겨울철 사전예방 궤양 제거 의무

3. 근거 :「식물방역법」제3조 및 제3조의 2, 제36조, 제38조, 제50조

4. 행정명령 기간 : 2023. 2.월 ~ 별도 해제 시 까지

5. 행정명령 사유 : 화상병 예방을 위한 농작업자 등 관련 종사자의 사전 준수 사항을 이행하여, 검역병 확산을 최소화하고자 함

6. 상기 행정명령을 따르지 않은 경우, 「식물방역법」제38조 제1항 및 「방제명령에 따른 손실보상·생계안정지원에 관한 규정」제5조에 따라 손실보상 시 감액기준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본 행정명령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명령의 효력 발생일로 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에 따라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법에 따라 관할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